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1호 2021. 12. 10.(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78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7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11
- 하동군 조례 제2480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13
- 하동군 조례 제2481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23
- 하동군 조례 제2482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하동군 조례 제2483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하동군 조례 제2484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8
- 하동군 조례 제2485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하동군 조례 제2486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하동군 조례 제2487호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43호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3
- 하동군 규칙 제124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 하동군 규칙 제124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1
- 하동군 규칙 제1246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7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74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80

예 규

- 하동군 예규 제23호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87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44호 2021년 하반기 추가 사망사업대상지 사망지 (변경)지정 고시문 94
- 하동군 고시 제24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9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176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1
- 하동군 공고 제1780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02

회 람									
--------	--	--	--	--	--	--	--	--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760호 목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106
- 하동군 공고 제2021-1763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공고(두우래저단지 조성사업)116
- 하동군 공고 제2021-1777호 연막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공고117
- 하동군 공고 제2021-1801호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2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78 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제2조(「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4조(「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 공증한다”를 “체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하동군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9조(「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전단 중 “산단조성과장”을 “산단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80%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80%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80%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 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8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인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1년 동안 감경)	50%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50%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0% 또는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

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생략)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 17. (생략)

④ (생략)

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8. ~ 18. (현행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신설>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p><신 설></p>	<p>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신 설></p>	<p>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신 설></p>	<p>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신 설></p>	<p>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신 설></p> <p>6. ~ 8. (생 략)</p>	<p>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후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13. ~ 15.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9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 -----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p>	<p>제9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탁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p>	<p>② -----</p>

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다. <단서 신설>

1. ~ 7. (생략)

----- 체결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략)	제12조(협약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 14. (생략)

3. ~ 14. (현행과 같음)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이 회계의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분임경리관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은 <u>산단조성과장이</u>, 그 외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5.7.1., 2018.8.3.></p> <p>2. (생략)</p>	<p>제5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 ----- -----.</p> <p>1 ----- ----- <u>산단개발과장</u> ----- ----- . -----</p> <p>2.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79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도로관리, 지역개발”을 “도로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축산경영”을 “농기계지원, 축산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인력, 농촌관광, 농촌자원, 귀농귀촌, 농기계지원”을 “농업인력, 농촌활
력, 농촌개발, 농촌관광, 귀농귀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p> <p>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생략)</p> <p>2. 건설행정, 농업기반, <u>도로관리</u>, <u>지역개발</u>, <u>선진교통</u>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p> <p>3. ~ 6. (생략)</p>	<p>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도로관리</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농업정책, 농업지원, <u>축산경영</u>, <u>축산위생</u>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p> <p>2. (생략)</p> <p>3. <u>농업인력</u>, <u>농촌관광</u>, <u>농촌자원</u>, <u>귀농귀촌</u>, <u>농기계지원</u>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12조(소관사무) ----- -----.</p> <p>1. ----- <u>농기계지원</u>, <u>축산경영</u>-----</p> <p>2. (현행과 같음)</p> <p>3. <u>농업인력</u>, <u>농촌활력</u>, <u>농촌개발</u>, <u>농촌관광</u>, ----- <u>귀농귀촌</u> -----</p> <p>4.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0 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원)	비 고
< 증 명 >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경력증명서	1통	500	
(2)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4)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500	
(2)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500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500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500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500	
(6)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500	
3.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1통	500	
(2) 경력확인서	1통	500	
4. 그 밖의 증명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통	500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1통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1통	3,000	
(3)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500	
2. 농수산 관계			
(1)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1건	2,500	
(2)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건	1,500	
(3) 어업허가 지위승계	1건	4,000	
(4)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	
(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000	
(6)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1건	2,000	

구 분	기 준	요 액(원)	비 고
3. 건설·주택·교통 관계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3)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1,000	
(4)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5)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보건·위생 관계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2)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40,000	
(3) 시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500	
(4)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	
(5)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	
(6)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	
(7)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	
(8)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신고	1건	35,000	
(9)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신고	1건	70,000	

5.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 시험수수료	1건당	4,000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 갱신1건당	4,000 2,000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4)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1건당	2,000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40mm미만 40mm이상	1,000 2,000	
(6)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8)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p>마이크로 필름 · 슬라이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p>전자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현행)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중명〉				〈중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경력증명서	1통	500		(1) 경력증명서	1통	500	
(2)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삭제〉			
(3)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3)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통	1,0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통	1,000	
(5)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5)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500		(1)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500	
(2)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500		(2)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500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500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500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500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500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500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500	
(6)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500		(6)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5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		〈삭제〉			
4. 회계에 관한 증명				4.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1통	500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1통	500	
(2) 경력확인서	1통	500		(2) 경력확인서	1통	500	
5.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5.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삭제〉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확인서	1주택	800		〈삭제〉			
6. 그 밖의 증명				6. 그 밖의 증명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통	500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통	5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1통	5,000		(1) 공유재산의 대부	1통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1통	3,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1통	3,000	
(3) 추시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500		(3) 추시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500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결합 발급의 경우 1,500)		〈삭제〉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현행)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2. 문화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2. 문화 관계			
〈삭제〉			
〈삭제〉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5)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	1건	60,000
(6)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신청	1건	30,000
3 농수산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 관리선 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4)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5)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6)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
(7)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3,000
(8) 내수면어업 면허	1건	9,000
(9) 내수면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
(10)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
(11) 내수면어업 허가	1건	5,000
(12)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1건	2,500
(13)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14) 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1건	1,000
(15) 선적증서 재교부	1건	1,000
(16)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2,000
(17)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18)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 제 허가 신청	1건	3,000
(19)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1건	4,000
(20)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000
(21)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22) 어선개조(건조발주) 허가	1건	1,0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 농수산 관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2)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1건	2,5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구 분	가 준	금 액	비 고
(23)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2,000	
(2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25) 어선등록	1건	3,000	
(26) 어선 변경등록	1건	3,000	
(2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1건	800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구 분	가 준	금 액	비 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발급		
(28)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건	1,500
(29)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30) 어업권보상등의 청구	1건	2,000
(31) 어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3,500
(32) 어업권원부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
(33) 어업권의보상등의청구	1건	2,000
(34)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
(35) 어업면허신청	1건	5,000
(36)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 허가 신청	1건	4,500
(37)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 (어선 사용승인)증재교부신청	1건	1,000
(38) 어업신고	1건	1,600
(3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
(40)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 신고	1건	1,600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1건	4,000
(42)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600
(43)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44) 어장구역등재결 신청	1건	3,000
(4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1건	4,000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1건	2,000
(48)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3,500
(49) 유해어법의사용 허가신청	1건	3,000
(50) 육상 변경허가	1건	1,600
(51)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5,000
(52) 입어재결신청	1건	3,000
(53)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신청	1건	3,000

(28)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건	1,5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1건	4,000
<삭 제>		
(43)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삭 제>		
(4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1건	4,000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1건	2,0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현행			
구분	기준	금액	비고
(54) 한시어업 허가 신청	1건	2,000	
(55) 한시어업 허가 연장 신청	1건	2,000	
(56)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58)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59)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4 산업자원 관계			
(1)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1건	2,000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3)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 주유소)	1통	20,000	
(4)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 판매소)	1통	10,000	
(5) 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	1통	10,000	
(6)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1통	20,000	
(7) 석유판매업신고(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1통	10,000	
5 건설·주택·교통 관계			
(1)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1,000	
(7)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9)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1건	600	
(10)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	
6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	
(5)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7.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 산업자원 관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건설·주택·교통 관계			
<삭 제>			
<삭 제>			
<삭 제>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1,000	
<삭 제>			
(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9)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1건	600	
<삭 제>			
6 부동산중개업 관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7. 환경 관계			
<삭 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현행			
구분	기준	금액	비고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삭 제>			
<삭 제>			

8 보건·위생 관계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2)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40,000
(3)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
(4)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	1건	40,000
(5)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1건	100,000
(6) 시설모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 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500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1건	500
(8) 안경업소 개설(양도·양수)등록 신청	1건	10,000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
(12)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
(13)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	1건	100,000
(14)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	1건	40,000
(15)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조산원) 개설신고	1건	40,000
(16)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
(1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양도양수 포함)	1건	10,000
(1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9)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 신고	1건	35,000
(20)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 신고	1건	70,000
9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2)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8 보건·위생 관계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2)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40,000
<삭 제>		
<삭 제>		
<삭 제>		
(6) 시설모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 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500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1건	500
<삭 제>		
<삭 제>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
(12)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9)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 신고	1건	35,000
(20)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 신고	1건	70,000
9. 체육시설 관계		
<삭 제>		
<삭 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구 분	현 행		
	기 준	금 액	비 고
10.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 갱신 1건당	4000 2000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구 분	개 정 안		
	기 준	금 액	비 고
10.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 갱신 1건당	4000 2000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4)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당	2000		(4)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당	2000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40mm미만 40mm이상	1000 2000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40mm미만 40mm이상	1000 2000
(6)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6)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8)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8)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1 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
- 3.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비 고
짚라인	어른(20세 이상)	45,000	40,000	※감면기준 1.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가.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2.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하동군 주민등록자 (단,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제시자) ※중복할인 제외.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40,000	35,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35,000	30,000	
빅스윙	어른(20세 이상)	18,000	16,0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16,000	14,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14,000	12,000	
파워팬/쿼점프	어른(20세 이상)	3,000	2,5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2,500	2,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2,000	1,500	
모노레일	어른(20세 이상)	5,000	4,5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4,500	4,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4,000	3,500	
알파인코스터	어른(20세 이상)	9,000	8,0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8,000	7,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7,000	6,000	
에코 어드벤처	어른(20세 이상)	10,000	9,0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9,000	8,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8,000	7,000	

[별표 3]

예약취소 등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제8조의2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취소일	비 율	
사용자의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총액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액의 7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환급 불가	
천재지변 및 시설 자체 결함으로 인한 시설 이용불가능시	전액 환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u> <u>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u> <u>3.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하동군의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2 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 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6년 12월 31일</u>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3 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4 호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하동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의 의원

2. 군 관계공무원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보행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자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5 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 - 2026년 12월 31일-----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6 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7 호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43 호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3. 사회·경제·민간단체의 장
-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을 조

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관리 번호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			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 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초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관리 번호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제4조 관련)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 분석서 (제4조 관련)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2. 구 분					
		신 설		강 화		내 용 심 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							
5. 분석 방법	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6.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7-1. 규제존속 기한	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2. 규제존속 사유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 의견서(제4조 관련)

1. 규 제 명 칭	
2. 규 제 내 용	
3. 관 련 부 서 / 민 간 단 체 의 의 의 의 의	<p style="text-align: center;">의 건 조 회 기 간, 대 상, 방 법, 결 과 등</p>
4. 자 체 심 사 의 의 (규 제 범 위, 방 법 등)	
5. 첨 부 자 료	<p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심 사 에 필 요 한 자 료 (표 준 조 례 안, 관 련 공 문 등)</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44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바목 중 “산단조성과장”을 “산단개발과장”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조의2(국장·과장)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조속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3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산단조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바. 산단개발과장 ----- -----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담당	분장 사무	
국내 유치	경제자유구역 국내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2	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운영 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조합회의 및 제도개선 업무
	4	산업유치계획과 유치업종 및 관련 개발(실시) 계획 변경
	5	국내 투자기업 분양(처분) 및 입주지원과 사후관리
	6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유치 활동
	7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홍보

담당	분장 사무	
해외 유치	경제자유구역 해외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업유치 활동
	2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업무
	3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4	해외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분양(처분) 및 입주지원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정책 기획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과·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정혁신(정부혁신, 도정혁신) 업무 총괄
	7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8 정책실명제 계획수립 및 공표
	9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1 외국인 등록 및 통계
	12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3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4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5 적극행정운영 및 지원
	16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17 알프스 하동 아카데미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예산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지방보조금 편성·심의회 총괄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10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담당	분장 사무
홍보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청렴 감사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담당	분장 사무	
	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관련 사항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법률정보서비스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제 발굴 및 개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관련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 협력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과건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4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5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6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담당	분장 사무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획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견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담당	분장 사무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혁신 지원	1	복무, 보안, 공인, 당직 관리
	2	사회적혁신(사회적혁신정책, 갈등, 청년) 업무 총괄
	3	공무국외출장 허가
	4	맞춤형복지제도, 동호회, 휴양시설 운영
	5	분권, 주민자치 업무
	6	4대보험, 공무원연금, 행정공제회, 직장금고 관리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업무
	9	우편물, 적십자회비, 국기계양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아동 청소년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담당	분장 사무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인구 정책	1	인구증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인구증가 시책추진
	3	출산장려시책 지원
	4	저출산대책

담당	분장 사무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 학습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담당	분장 사무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관리에 관한 사항	
미디어 정보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인터넷운영 및 처리
	5	전자결재시스템 설치 및 운영
	6	정보전산 보안관리
	7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8	개인정보보호관리
	9	정품 및 표준프로그램 보급
	10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관리
	11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12	정보전산 장비관리
	13	전산실 관리 및 운영
	14	기타 정보화에 관한 업무
	15	하동군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6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17	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제전략과장

담당	분장 사무	
스마트 전략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괄추진
	2	국가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한방향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총괄
	5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평가
	6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총괄
	7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8	행복생활권사업에 관한 사항
	9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10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사업 총괄
	11	4차산업, 뉴딜사업

담당	분장 사무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 · 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3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 및 관리
	4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9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10	취업알선 및 일자리센터 운영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산품 품질관리
	14	상품권 발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거래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의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지역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2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도시가스 공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4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5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6	광업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7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주민행복과장

담당	분장 사무	
복지 기획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 구호업무 및 재난관리 자원 및 창고 관리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총괄
	9	읍면복지회관(목욕탕) 관리
	10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1	충훈탑 및 독립공원 관리
	12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13	초중고교육비 및 학업증진사업

담당	분장 사무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6	자활센터 관리
	7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8	자활기금 특별회계 관리
	9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관리
	10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총괄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노인 복지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6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7	기초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0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11	어르신센터 운영관리

담당	분장 사무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여성 정책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양성평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지원
	4	여성폭력예방사업 추진
	5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총괄 관리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
	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0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
	11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 조사 관리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담당	분장 사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희망 복지 지원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5	읍면동 맞춤형복지통합서비스
	6	복지사각지대 발굴
	7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8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9	명절위문사업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후원 기탁사업
	11	행복천사이음뱅크 자원관리 및 연계
	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
	14	긴급복지지원

15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16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17	안전문화 확산(119희망의집) 지원
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추진
19	복지종합상담창구 운영
20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재정관리과장

담당	분장 사무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세정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담당	분장 사무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경리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담당	분장 사무	
	세입 및 채납관리에 관한 사항	
세입 관리	1	세외수입 총괄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보조금 관리
	4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지방세 채납액 징수
	10	지방세 채납처분(압류, 공매의뢰 등)
	11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제재)
	12	결손처분
	13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담당	분장 사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부동산 평가	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결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결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
	3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4	재산세과세대장 관리
	5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부과
	6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관리

	7	개발부담금 조사·산정 및 부과, 자료 관리
--	---	-------------------------

담당	분장 사무	
공유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2	공유재산(군유,도유),일반재산 관리(공유재산심의회,취득,처분,대부,용도폐지,용도 변경 등)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총괄
	4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5	전기, 수도, 냉난방 유지관리
	6	공공건물 공제 등록
	7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8	물품출납 및 보관 처분

민원과장

담당	분장 사무	
종합 민원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민원(일반,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점검
	3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4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5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6	정부24 운영
	7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8	고객만족도설문조사
	9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1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행정정보공동이용
	13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담당	분장 사무	
토지 정보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RA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지적 재조사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3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지급·징수·공탁

	4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관리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6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담당	분장 사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공간 정보	1	공간정보에 관한 사무
	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3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6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무
	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8	부동산 실명법 운영
	9	부동산 중개업 관리

2.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

담당	분장 사무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 기획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2	관광 통계 업무 추진
	3	신규관광자원 개발
	4	유원시설업 및 야영업 등록관리
	5	캠핑장 등록 및 유지관리
	6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7	관광단지 트레킹·힐링공원 조성사업
	8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9	지리산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지원업무
	11	관광지 지정 및 개발
	12	청학동 관광지 개발사업

담당	분장 사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관광 개발	1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
	3	익사이팅 레포츠 개발사업
	4	폐철도 관광자원개발사업
	5	남해안권 관광개발에 관한사항
	6	관광안내관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7	케이블카 조성사업
	8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담당	분장 사무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관광 마케팅	1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2	관광시설 마케팅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5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6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유지관리

담당	분장 사무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슬로 시티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홍보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5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8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9	관광상품 개발
	10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1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축제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5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6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문화체육과장

담당	분장 사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 예술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담당	분장 사무	
	문화재에 관한 사항	
문화재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	가야사 복원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	스포츠마케팅 사업
	2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준비
	3	국제적인 대회유치 기반조성
	4	체육진흥업무 활성화 추진
	5	하동군체육회 업무 지원
	6	생활체육 업무추진 및 동호인 단체 육성 관리
	7	체육시설 등록 신고 및 지도 감도
	8	체육공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4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계획 수립
	5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발
	6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7	시설물 이용 홍보 및 수강인원 관리	

특화산업과장

담당	분장 사무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녹차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
	3	가루녹차 생산 기술지도(차광채배)
	4	녹차연구소 지원 관리
	5	차 생산자단체 협의 관리
	6	야생녹차산업특구 지정 관리
7	하동녹차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관리 등록	

담당	분장 사무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	농업유산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하동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
	3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4	하동녹차 홍보 및 박람회 지원
	5	정금차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보전 관리
	6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운영
7	농업유산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담당	분장 사무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1	엑스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엑스포 추진	2	엑스포 추진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3	엑스포 홍보 마케팅 운영
	4	엑스포 추진 사업 발굴
	5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담당	분장 사무	
엑스포 지원	엑스포 지원에 관한 사항	
	1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종합계획 수립
	2	엑스포 연계 거점지역 기반시설 운영 계획 수립
	3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4	하동야생차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환경보호과장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정책	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1	기후변화적응 대책 및 탄소포인트제 추진
	2	섬진강 낙동강(덕천강)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3	수변구역관리 및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4	수계기금관리
	5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6	황사피해·오존 예방대책 추진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협의
	9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및 환경위원회 운영관리
	10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12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전개
	13	토양, 실내공기질, 빗공해 관리
	14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및 운영
	15	수질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16	어린이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17	녹색제품 구매추진
18	환경단체 지원관리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지도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1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2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4	생활 소음, 진동, 악취 관리
	5	수질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및 예방관리
	6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지원
	7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8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구조
	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10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11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사업 추진
1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피해방지단운영, 수렵장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자원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순환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3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및 기금조성
	4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수거대책 수립
	5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단속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및 다량배출업소 관리
	7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8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총괄관리
	9	농촌농업 폐비닐관리 및 공동집하장 설치
	10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11	1회용품, 과대포장상품 지도점검
	12	쓰레기 집하시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관리
	13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및 나눔장터 개최
	14	국토대청소 운동,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15	환경미화원 관리 총괄
	16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7	사업장, 건설, 의료, 지정폐기물 허가 및 지도점검
	18	폐기물처리신고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19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및 위반사업장 단속

담당	분장 사무	
탄소 제로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1	탄소 없는 마을 조성
	2	공기캔 상품개발 및 판매활성화
	3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활성화 및 생태해설사 운영
	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6	녹색성장브랜드사업 추진
	7	생물다양성보전 및 두꺼비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추진
	8	습지보호 및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
	9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추진
	10	특정도서 관리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
	2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3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 및 대금관리
	4	일반차량 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관리
	5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6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수도사업과장

담당	분장 사무	
관리 운영	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상수도 운영 총괄 및 조직관리, 경영혁신·합리화에 관한 사항
	2	물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3	취·정수장 운영 및 관리
	4	저수조 청소(업) 관리

	5	상수도 관리원 운영 및 상수도 사용량 검침
	6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요율조정
	7	상수도 주요정책 총괄 및 운영평가 등 관련 업무
	8	예산 편성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9	상수도 통계조사 및 상수도관련 조례 제·개정 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상수도	1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	상수도 송·배수 및 상수관로와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3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시행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5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시행 및 관리
	6	급수공사 승인
	7	노후 상수관로 정비
	8	누수탐사 및 누수사고 복구
	9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1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하수도에 관한 사항	
하수도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2	공공(일반, 소규모, 면단위)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3	하수관로의 정비 및 설치사업
	4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5	하수처리구역 관리
	6	하수도 관련 조례 제·개정
	7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8	분뇨 등 관련영업 인·허가 및 관리
	9	하수도 통계 작성 및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관리
	11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12	하수도대장(관망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 시설	1	공공(일반, 소규모, 면단위)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2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3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개선사업
	5	하수도 준설사업
	6	침사물(협잡물) 및 공공하수도 슬러지 위탁처리에 관한 영역
	7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8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리
	9	공공하수도 민간위탁(관리대행)사무 운영 관리
	10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분석
	11	하수시설 관리원 운영 및 하수사용량 검침

3.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장

담당	분장 사무	
도시 계획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10	1970관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도시 개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도시 재생	도시재생, 지역·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	경관개선사업 추진
	3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4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담당	분장 사무	
건축 민원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담당	분장 사무	
건축 행정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	---	-----------------

담당	분장 사무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복합 민원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건설교통과장

담당	분장 사무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설 행정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담당	분장 사무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농업 기반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담당	분장 사무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 관리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담당	분장 사무	
선진 교통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안전총괄과장

담당	분장 사무	
안전 기획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관리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7	승강기 관리 업무
	8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9	지역축제안전관리
	10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11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1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3	안전문화운동 추진
14	안전한국훈련	

담당	분장 사무	
민방위 안전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6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8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9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10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11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12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방재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담당	분장 사무	
하천 관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4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5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6	공유(도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담당	분장 사무	
통신 관제	통신 및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전화망 및 전화교환시스템 관리
	2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3	전자정부통합망 관리
	4	지방행정 정보망 관리
	5	무선인터넷 존 구축 및 관리
	6	행정방송 및 방송실 관리
	7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리
	8	방범용 CCTV 설치운영
	9	마을방송 운영관리

해양수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해양 개발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10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11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담당	분장 사무	
어업 생산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7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	--------------

담당	분장 사무	
내수면 개발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1	내수면어업 진흥 및 발전 종합대책 수립
	2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어업 처분 및 지도 감독
	3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4	내륙어촌 재생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특산수산물 축제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섬진강 관리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6	국가하천(섬진강 구역) 공유(국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7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산림녹지과장

담당	분장 사무	
산림 정책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정책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산림분야종묘업등록및양묘생산·수급관리
	4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농림사업(임업 산촌분야) 취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9	임산물 소득사업 재해에 관한 사항
	10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11	백두대간 지원업무
	12	산림통계(산림기본통계, 임산물 생산통계)
	13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14	밤나무 재배관리
15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임업분야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산림 보호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인력 및 장비 관리
	3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4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 등)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5	일반병해충 방제(솔껍질깍지벌레, 꽃매미 등)
	6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반 운영 관리)
	7	정책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8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관리)	

9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굴삭기, 우드그랩 등)
10	산림사법업무(피의자 신문, 사건송치 등)
11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지도 단속 및 산지 정화
12	불법산림훼손지 복구 및 관리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시료채취 검경 등)
14	소나무재선충병 검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
15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신고
16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17	송림공원 관리
18	자연공원(국립공원, 고소성군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19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관리
20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증명

담당	분장 사무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구역 등의 지정 협의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 대책 및 복구(산사태 등)
	5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6	임도 계획수립 및 개설, 관리
	7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8	사방지·보안림 지정 관리
	9	등산로 정비계획 및 조성관리
	10	임업진흥권역 관리
	11	산림복원 업무
12	산림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치유의 숲 조성사업
	3	유아숲 등 체험숲 조성 및 관리
	4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6	산림복지단지 조성
	7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사 관리
	8	삼화에코하우스 관리
	9	산림레포츠 조성
10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관리	
11	기타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담당	분장 사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3	명상숲 조성 업무
4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	특색있는 하동숲 조성사업	

6	지방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마을쉼터 조성, 유지관리
8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9	녹지네트워크구축기본계획수립추진
10	도시림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숲 조성

산단개발과장

담당	분장 사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갈사 개발	1	갈사만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갈사만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유치 지원 및 관리
	3	갈사만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업무
	4	갈사만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5	해양플랜트종합 시험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 및 관리
	6	갈사만산업단지 보상업무 지원 *단지별 보상업무 추진
	7	공업용수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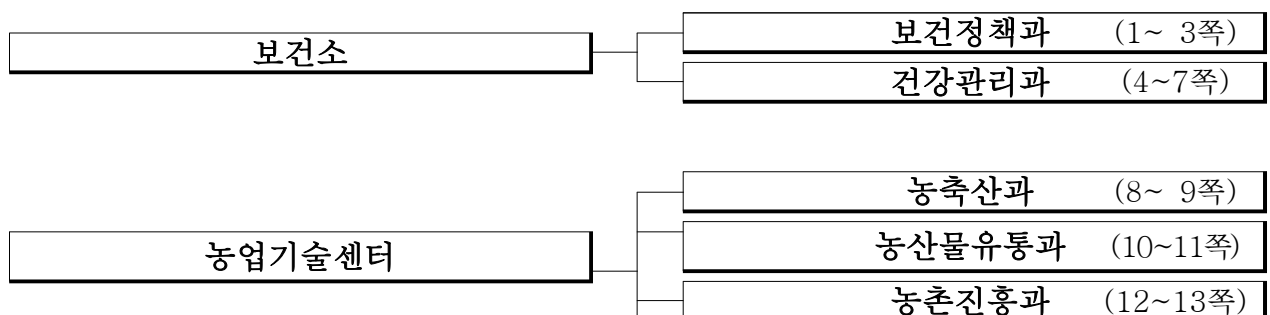
담당	분장 사무	
	대송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대송 개발	1	대송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2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업무
	3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담당	분장 사무	
	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두우 레저	1	두우레저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
	2	두우레저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3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업무 지원
	4	두우레저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5	금성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6	경제자유구역 내 보상업무 지원

담당	분장 사무	
	경제자유구역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 지원	1	산단 소송 지원
	2	산단 고소·고발 업무 추진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의2 및 제9조 관련)



농업소득과 (14~15쪽)

1.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담당	분장 사무	
보건 행정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진단 등 신고
10	보건소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업무	

담당	분장 사무	
감염병 관리 대응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1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
	2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3	감염병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 대응)
	4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5	한센환자 관리지원 사업
	7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관리
	8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9	결핵환자관리(등록, 검진, 관리)
	10	방역소독사업 (연막, 연무, 수리)
	11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감염병 관리 웹 보고
	12	기생충퇴치사업
	1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분장 사무	
예방 접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	접종시행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2	접종대상자 관리, 접종현황 모니터링
	3	접종센터 확보 및 운영관리
	4	임시예방접종 실시
	5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6	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
	7	백신공급 및 관리
8	예방접종협의회 관리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의약	의약에 관한 사항	
	1	의무 및 약물관리
	2	의료기관, 약국 행정처분
3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4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허가) 등
5	약국 개설 및 변경신고 등
6	마약류관리 및 장기이식
7	보건의료분야 재난관리
8	365 안심병동사업
9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10	의료기기 및 화장품관리
11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13	특수의료장비 관리
14	한랭 및 온열질환 관리
15	저소득층 무료 안경지원사업
16	충무계획(식품의약품 안전처)

담당	분장 사무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위생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9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10	음식문화개선사업
	11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1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업무
	13	집단급식소 신고 운영관리

건강관리과장

담당	분장 사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1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	영양플러스사업
	5	영유아 건강검진 및 지원
	6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1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2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13	임산부 양수검사비 지원

담당	분장 사무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만성 질환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리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5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6	금연클리닉 운영
	7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운영
	8	채가 암 관리사업
	9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10	구강보건사업
	11	어르신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
	12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13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활동, 절주, 비만, 영양)
	14	지역사회 건강조사
	15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16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17	국민영양관리사업

담당	분장 사무	
건강 지원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2	중증정신질환 관리
	3	위기대응 및 개입 서비스 제공
	4	자살예방사업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성인 정신건강증진사업
	7	우울증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8	응급 및 행정입원관리에 대한 사항
	9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1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4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 특수질환)
	15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16	건강도시 관련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치매 안심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	
	1	치매예방 관리사업
	2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5	치매조기 검진사업
	6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7	치매가족 지원사업
	8	치매 인식개선사업
	9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10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11	치매안심마을 운영
12	치매상담 및 등록사업	

담당	분장 사무	
----	-------	--

진료	진료에 관한 사항	
	1	환자진료(일반,치과,한의학,물리치료)에 관한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 운영
	3	건강검진 업무
	4	각종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료비 청구 업무
7	수입금 관리	

2.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농업정책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업법인 관리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농업지원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공익형 직불제 지원
	3	부농육성사업
	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5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농기계지원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담당	분장 사무	
축산경영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8	축사환경개선	

담당	분장 사무	
축산 위생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재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물 위생 전반	

농산물유통과장

담당	분장 사무	
수출 지원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8	수출포장재 지원	

담당	분장 사무	
유통 마케팅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지도
	4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5	온라인 판매처 확보 등 판로 개척
	6	경남 추천상품 관리
	7	농산물 유통안정화 지원
	8	포장디자인 개발 활용
	9	농산물 포장재 통합 관리 및 지원
	10	농산물 디자인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11	농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및 지원	

담당	분장 사무	
농산물 융 복합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2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3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4	농산물융복합 기술개발사업
	5	벤처농업 육성
	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7	농산물가공창업지원 및 육성
	8	농산물 가공관련 연구회 육성 지원
	9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
	10	농산물 가공 소득 활동 지도
11	농산물가공교육 교육반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로컬푸드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지역푸드플랜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3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4	로컬푸드 단체 지원 및 육성
5	로컬푸드 역량강화 교육	

농촌진흥과장

담당	분장 사무	
농업인력	농업인력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8	농업경영 개선지도
	9	농업인 정보화 촉진사업
	10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11	농촌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12	농작업환경개선 지도
	1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1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15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16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17	향토자원 발굴 및 보급
18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농촌활력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준비 및 신청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 유지관리
	3	중간지원조직 관리 및 운영
	4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5	군 지역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추진
	6	지역발전사업 평가 총괄
	7	시군 창의사업
8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담당	분장 사무	
농촌개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
	2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	권역단위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4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5	신규마을조성사업	

담당	분장 사무	
농촌 관광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관리 지도
	4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5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육성 및 관리
6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분장 사무	
귀농 귀촌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6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7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농업소득과장

담당	분장 사무	
스마트 농업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기능성 신소득작목 육성
8	인공지능 도입 스마트농업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식량 특작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 등 농업환경 분석 및 기술지도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8	특작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
9	밭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도	

담당	분장 사무	
원예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원예산업 종합계획 및 생산
	2	원예작물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4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5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6	원예작물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담당	분장 사무	
과수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3	과수분야 소득작목 개발 및 신기술 보급지도
	4	과수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5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6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드론 활용	드론 관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드론활용 종합계획 수립
	2	드론활용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추진
	3	드론활용 긴급 방제 및 조사료 과중 지원
	4	드론활용 안전관리지도 및 홍보
	5	군민 드론교육 실시 및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6	드론활용 하동군 주요 축제현장·관광지 홍보영상 촬영
7	드론 장비 관리 및 드론촬영 지원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45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713	355	77	71	13	23	174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682	351	77	46	11	23	174
	4급 소계		5	4	1				
	서기관·기술서기관		5	4	1				
	5급 소계		40	18	2	5	2	1	12
	행정		4	3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무·의료기술·간호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6	6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 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70	86	15	11	2	5	51
	행정		9	9					
	세무		1	1					
	숙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3
	행정·세무		14	8	1			1	4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1	6		4		1	10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8	16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세무·농업		8	3					5
	행정·세무·시설		5	5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6	2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7		4				3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4		4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 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공업·환경·시설		4	4					
	행정·농업·녹지·환경		3	1					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 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92	98	19	11	4	9	51
	행정		20	14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0		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방재안전		5	2			1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보좌기 관포함)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76	88	35	5	2	3	43
	행정		20	13			2		5
	세무		1	1					
	사회복지		11	4				1	6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2	7					5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2	2					
	운전		6	1					5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10	5				1	4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농업		9	2		2			5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13	13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5	5					
	행정·보건·간호		6	1	5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7	3					4
	행정·농업·시설		9	5		1			3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5		3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99	57	5	14	1	5	17
	행정		15	9		2		2	2
	사회복지		13	5				1	7
	환경		2	2					
	공업		4	4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4				1	1
	행정·농업		6	2		3			1
	행정·시설·방호		9	7		2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4			4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전산·통신		4	3		1			
	행정·세무·시설		6	6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2			1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지 도	비서		1	1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 1246 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하동군수를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 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 기자재 및 장비·비품 부대설비 등 일체에 대하여 위·수탁기간 만료시 본래의 건물용도에 훼손되지 않는 것은 쌍방 합의에 의거 회수할 수 있으나 건물 등에 부탁되어 건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은 철수 할

수 없으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따라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전문인력)를 채용하여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⑤"을"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판매시설(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원 운영) "을"은 수련원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청소년 기본법령」,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련원은 하동군내 청소년과 일반군민이 우선 이용토록 한다.
- 2.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시설물 활용도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3. 청소년, 군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방과후, 방학기간 등 수련 시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수련원 운영에 관하여는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방침에 따른다.

제4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을"은 다음 기준에 의거 운영계획 및 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련원의 연간운영 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전년도 11월 중에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수련원의 연간운영 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3. 필요시 수시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①수련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갑"이 군내 청소년 건전 육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접 운영(사용)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 납부 보증금으로 일금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을"에게 정산 후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련원 운영 중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 후 1월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검사를 한 후 "을"이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본 수련원의 공식 명칭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원은 수탁 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련원 운영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할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갑"과 "을"은 수련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⑤"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

주 소 :

생년월일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② (생략)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안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 ----- ----- 한 다.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4 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수가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하동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7. 상·하수도 시설 등의 유지관리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② 이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

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수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군수는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관리감독자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사용부서가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을 개별 사업장으로 간주·분리하여 운영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부서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 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 인사부서의 장

나. 위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사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 근로자 대표

나. 위원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 이내의 근로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담당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에게 직무를 위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

항의 집행 등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로 대체되어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자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군 사업장의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을 전 부서에 알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

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한다.

제23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차량의 점검정비 적정 여부
6.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25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유해요인발생 부서의 보건수칙) 유해 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보건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구) ① 군수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군수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 등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 또는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9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원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된 재해의 원인을 찾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른 서류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발령한다.

2021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예규 제 23 호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한다.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적용되며, 군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또는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4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 관련 예산 확보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7.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하고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고충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① 군 소속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군 소속 구성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주민행복과에 성희롱·성폭력 고

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민행복과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 대장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행복과장은 예방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신청) ①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피해자가 신고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조사하였거나 또는 처리 중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고충상담원은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 등) ① 주민행복과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여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주민행복과장, 행정과장, 청렴감사담당, 노조위원장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민행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과 주민행복과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사 완료 시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2. 제16조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징계) ① 군수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 2021 - 244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1년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 합니다.

2021. 12. 06.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1년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3. 변경 사유 :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
4.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6.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사방지 변경 지정조서 (2021년하반기(추가)계류보전사업-하동옥종북방지구)										
토 지 소유자		성 명		국토교통부 외						
		주 소		국토교통부 232 외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산29-1 외						
조 사 년 월 일				2021년 09월 14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1년 09월 14일						
사방지 지정 면적				396		㎡				
사방지 지정 사유				2021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 사 자 직 급 :				지방녹지서기						
성 명 :				이 해 령		(인)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지정 면적 변경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77,017	396.0	445.9			2021년하반기(추가)계류보전사업 (하동옥종북방지구)
하동	옥종	북방	산29-1	천	1,914	89	104.3	국토교통부 232	국토교통부	
하동	옥종	북방	산32-1	임	74,670	277	311.6	진주시 인사동 ****-**	정*식	
하동	옥종	북방	883	전	433	30	30	진주시 강남로 **, **** ****	박*치	

사방지 지정 조서 (2021년하반기(추가)계류보전사업-하동옥종청룡지구)									
토 지 소유자		성 명		권*기 외					
		주 소		진주시 새평거로 ***, ***, ** 외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산59-1 외					
조 사 년 월 일				2021년 09월 14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1년 09월 14일					
사방지 지정 면적				296		㎡			
사방지 지정 사유				2021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 사 자 직 급 :				지방녹지서기					
성 명 :				이 해 령		(인)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188,419	296		
하동	옥종	청룡	산59-1	임	91,339	30	진주시 새평거리 ***, ***, ***	권*기
하동	옥종	청룡	산69-22	임	2,232	141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 ***	양*재
하동	옥종	청룡	산69-14	구	265	50	농림축산식품부229	국
하동	옥종	청룡	산69-15	임	250	52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 ***	양*재
하동	옥종	청룡	1017-1	구	94,333	23	국토교통부 232	국

2021년 하반기(추가)계류보전사업
(하동옥종청룡지구)



하동군 고시 제2021-24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 12. 07.

하 동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6 창	하동007	NI52-1-28-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6 창	하동007	NI52-1-28-007	준보전산지

나.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8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7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6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29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33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34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39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0 도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4 도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5 잡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506-2 잡	곤양064	NI52-2-22-06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9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8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7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6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5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4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리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3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5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6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7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8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9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0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1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2 잡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9-10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9-9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33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32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31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29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25 도	남해014	NI52-6-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257-1 대	하동070	NI52-1-28-07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92-2 대	하동059	NI52-1-28-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143-2 창	곤양054	NI52-2-22-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741-3 대	하동006	NI52-1-28-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447-4 창	하동017	NI52-1-28-017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하동군청 산림복지과((☎055-880-248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m²)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 적			전용용도	도업명및 도업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1	공익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6 창	1,404.88	1,154.28	1,154.28		NI52-1-28-007^하동007
2	공익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6 창	1,404.88	250.61	250.61		NI52-1-28-007^하동007
소계		공익용산지→준보전				2,809.76	1,404.89	1,404.88		
3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8 잡	1,644.03	1,644.03	1,644.03		NI52-2-22-085^곤양085
4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7 잡	2,440.29	2,440.29	2,440.29		NI52-2-22-085^곤양085
5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6 잡	1,212.54	1,212.54	1,212.54		NI52-2-22-085^곤양085
6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29 잡	2,438.94	2,330.85	2,330.85		NI52-2-22-085^곤양085
7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33 잡	2,405.87	14.02	14.02		NI52-2-22-085^곤양085
8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34 잡	1,939.60	170.55	170.55		NI52-2-22-085^곤양085
9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39 잡	1,772.92	1,772.92	1,772.92		NI52-2-22-085^곤양085
10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0 도	29.91	29.90	29.90		NI52-2-22-085^곤양085
11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4 도	50.98	50.97	50.97		NI52-2-22-085^곤양085
12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19-45 잡	1,773.89	1,773.89	1,773.89		NI52-2-22-085^곤양085
13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506-2 잡	6,507.13	3.62	3.62		NI52-2-22-064^곤양064
14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9 잡	184.48	184.47	184.48		NI52-2-22-086^곤양086
15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8 잡	1,083.50	1,083.50	1,083.50		NI52-2-22-086^곤양086
16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7 잡	69.45	69.45	69.45		NI52-2-22-086^곤양086
17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6 잡	5,200.94	5,200.94	5,200.94		NI52-2-22-086^곤양086
18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5 잡	4,020.44	4,020.44	4,020.44		NI52-2-22-086^곤양086
19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4 잡	2,542.99	2,542.99	2,542.99		NI52-2-22-086^곤양086

1/3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m²)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 적			전용용도	도업명및 도업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20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3 잡	1,056.87	1,056.87	1,056.87		NI52-2-22-086^곤양086
21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5 잡	3,461.61	3,461.61	3,461.61		NI52-2-22-086^곤양086
22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6 잡	89.72	89.72	89.72		NI52-2-22-086^곤양086
23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7 잡	1,206.06	1,206.06	1,206.06		NI52-2-22-086^곤양086
24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8 잡	135.83	135.83	135.83		NI52-2-22-086^곤양086
25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9 잡	48.23	48.23	48.23		NI52-2-22-086^곤양086
26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0 잡	2,237.62	2,237.62	2,237.62		NI52-2-22-086^곤양086
27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1 잡	460.48	460.48	460.48		NI52-2-22-086^곤양086
28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2-12 잡	428.86	418.95	418.95		NI52-2-22-086^곤양086
29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9-10 도	462.95	462.95	462.95		NI52-6-4-014^남해014
30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9-9 도	389.48	389.48	389.48		NI52-6-4-014^남해014
31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33 도	783.98	783.98	783.98		NI52-6-4-014^남해014
32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32 도	429.68	429.68	429.68		NI52-6-4-014^남해014
33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31 도	69.36	69.36	69.36		NI52-6-4-014^남해014

34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29 도	106.16	106.16	106.16	NI52-6-4-014^남해014
35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68-25 도	686.30	686.30	686.30	NI52-6-4-014^남해014
36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257-1 대	656.98	656.98	656.98	NI52-1-28-070^하동070
37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92-2 대	596.34	596.34	596.34	NI52-1-28-059^하동059
38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143-2 창	5,534.55	5,534.55	5,534.55	NI52-2-22-054^곤양054
39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741-3 대	370.56	370.56	370.56	NI52-1-28-006^하동006

2/3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m²)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적			전용용도	도업명및 도업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40	임업용산지→준보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447-4 창	297.53	263.28	263.28		NI52-1-28-017^하동017
소계	임업용산지→준보전					54,827.02	44,010.36	44,010.36		
	합 계					57,636.78	45,415.25	45,415.24		

<작성요령>

- 7-1-3 유형 :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 전용용도는 골프장(), 스키장(), 산업단지(), 택지() 등으로 작성하고 ()내는 허가?협의?신고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골프장(협의), 병원(허가), 농가주택(신고)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

하동군 조례 제2021-176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항의 지급액란 중 “12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u>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u>		[별표 5] <u>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u>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액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하동군 공고 제2021-1780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의 내용과 그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직·인력 운용(제3조)
 -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4조)
 -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제6조)
 - 라. 지도·감독 등(제8조)
 -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제10조 ~ 제11조)
 - 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제12조 ~ 제1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전화 055-880-2025, FAX 880-201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별지 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경상남도·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허가 취소
-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군수는 도지사에게 군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 - 1760호

목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목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03.

하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6. (23일간)
2. 사 업 명 : 목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4. 사업위치 :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224번지 일원
5.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309필, 228,497.1m²
6. 지적조서 : **【붙임】**
7. 관계서류 공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나. 공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8. 문 의 처 :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부서(☎055-880-2123)

붙 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지적확정조사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하동읍	목도리	310-7	답	1,051	하동읍	목도리	310-7	답	1,051.0	0.0	0.0	강**	대전 서구 갈마동 **** 큰마을아파트 ***동 ****호
2	하동읍	목도리	312-23	답	1,114	하동읍	목도리	312-23	답	1,132.9	18.9	0.0	강**	대전 서구 갈마동 **** 큰마을아파트 ***동 ****호
3	하동읍	목도리	366	대	202	하동읍	목도리	366	대	202.0	0.0	0.0	강**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동 ****호
4	하동읍	목도리	369-1	대	172	하동읍	목도리	369-1	대	182.6	10.6	0.0	강**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동 ****호
5	하동읍	목도리	306-18	답	2,000	하동읍	목도리	306-18	답	2,000.0	0.0	0.0	강**	비파리 ****-** 무지개맨션 가동 ***호
6	하동읍	목도리	309-7	답	639	하동읍	목도리	309-7	답	799.2	160.2	0.0	강**	***
7	하동읍	목도리	311-7	전	1,323	하동읍	목도리	311-7	전	1,323.0	0.0	0.0	강**	***
8	하동읍	목도리	309-6	답	1,191	하동읍	목도리	309-6	답	1,191.0	0.0	0.0	강**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 ****동 ****호 (중동,복사골)
9	하동읍	목도리	313-3	전	935	하동읍	목도리	313-3	전	928.0	0.0	7.0	강**	하동읍 목도리 ***
10	하동읍	목도리	428	대	466	하동읍	목도리	428	대	389.2	0.0	76.8	강**	***
11	하동읍	목도리	312-18	전	1,940	하동읍	목도리	312-18	전	1,940.0	0.0	0.0	강**	경기도화성시봉담읍유리마을길**,**동***호(봉담기산베스티빌)
12	하동읍	목도리	339	전	36	하동읍	목도리	339	전	36.0	0.0	0.0	강**	서울 도봉구 미아동 ****-****
13	하동읍	목도리	310-5	답	327	하동읍	목도리	310-5	답	327.0	0.0	0.0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4	하동읍	목도리	310-6	전	912	하동읍	목도리	310-6	전	912.0	0.0	0.0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5	하동읍	목도리	310-19	답	670	하동읍	목도리	310-19	답	670.0	0.0	0.0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6	하동읍	목도리	310-14	답	694	하동읍	목도리	310-14	답	694.0	0.0	0.0	강**	**
17	하동읍	목도리	311-2	답	1,666	하동읍	목도리	311-2	답	1,735.5	69.5	0.0	강**	**
18	하동읍	목도리	306-3	답	1,580	하동읍	목도리	306-3	답	1,506.2	0.0	73.8	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
19	하동읍	목도리	386-4	대	271	하동읍	목도리	386-4	대	372.8	101.8	0.0	강**	****-*
20	하동읍	목도리	369-2	대	221	하동읍	목도리	371	대	509.0	0.0	0.0	강**	***
21			371	대	288									
22	하동읍	목도리	370	대	149	하동읍	목도리	370	대	149.0	0.0	0.0	강**	***
23	하동읍	목도리	310-11	답	833	하동읍	목도리	310-11	답	833.0	0.0	0.0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4	하동읍	목도리	406-2	대	324	하동읍	목도리	406-2	대	331.9	7.9	0.0	강**	****-*
25	하동읍	목도리	312-5	답	3,231	하동읍	목도리	312-5	답	3,231.0	0.0	0.0	강**	****-*
26	하동읍	목도리	310-32	답	1,183	하동읍	목도리	310-32	답	1,183.0	0.0	0.0	강**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주공그린빌아파트****-****
27	하동읍	목도리	산20	임야	1,137	하동읍	목도리	산20 (339-1)	임야	944.8	0.0	192.2	강** 강** 강** 박**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
28	하동읍	목도리	406	대	1,144	하동읍	목도리	406	대	1,298.0	154.0	0.0	강**	***
29	하동읍	목도리	산8-2	임야	429	하동읍	목도리	산8-2 (406-4)	임야	297.7	0.0	131.3	강**	***
30	하동읍	목도리	산9-1	임야	163	하동읍	목도리	산9-1 (406-3)	임야	181.4	18.4	0.0	강**	***
31	하동읍	목도리	311-10	대	510	하동읍	목도리	311-10	대	695.7	185.7	0.0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32	하동읍	목도리	311-18	대	861	하동읍	목도리	311-18	대	774.8	0.0	86.2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33	하동읍	목도리	311-21	전	790	하동읍	목도리	311-21	전	251.0	0.0	51.3	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34								311-32	전	487.7				
35	하동읍	목도리	312-22	전	2,261	하동읍	목도리	312-22	전	2,284.6	23.6	0.0	강**	경상남도통영시항북길****,**동***호(정량동,삼익아파트)

36	하동읍	목도리	307-12	도로	29	하동읍	목도리	307-12	도로	10.8	0.0	18.2	국(*****)	
37	하동읍	목도리	307-13	도로	12	하동읍	목도리	307-13	도로	15.4	3.4	0.0	국(*****)	
38	하동읍	목도리	831-20	도로	4,302	하동읍	목도리	831-20	도로	6,164.7	1,862.7	0.0	국(*****)	
39	하동읍	목도리	832-1	도로	119	하동읍	목도리	832-1	도로	119.0	0.0	0.0	국(*****)	
40	하동읍	목도리	224	도로	1,398	하동읍	목도리	224	도로	1,497.9	537.1	0.0	국(*****)	
41								224-2	도로	437.2			국(*****)	
42	하동읍	목도리	306-5	도로	136	하동읍	목도리	306-5	도로	136.0	0.0	0.0	국(*****)	
43	하동읍	목도리	306-6	구거	3,299	하동읍	목도리	306-6	구거	1,651.4	0.0	1,117.7	국(*****)	
44								306-35	구거	368.4			국(*****)	
45								306-36	구거	161.5			국(*****)	
46	하동읍	목도리	307-1	도로	1,386	하동읍	목도리	307-1	도로	2,121.0	735.0	0.0	국(*****)	
47	하동읍	목도리	307-22	도로	1,793	하동읍	목도리	307-22	도로	2,816.0	1,023.0	0.0	국(*****)	
48	하동읍	목도리	309-2	도로	116	하동읍	목도리	309-2	도로	116.0	0.0	0.0	국(*****)	
49	하동읍	목도리	310-28	도로	413	하동읍	목도리	310-28	도로	511.7	98.7	0.0	국(*****)	
50	하동읍	목도리	389-3	구거	129	하동읍	목도리	389-3	구거	123.4	0.0	5.6	국(*****)	
51	하동읍	목도리	389-5	구거	136	하동읍	목도리	389-5	구거	53.4	0.0	82.6	국(*****)	
52	하동읍	목도리	392	유지	364	-	-	-	-	말소	0.0	364.0	국(*****)	
53	하동읍	목도리	394	유지	486	하동읍	목도리	394	유지	말소	0.0	486.0	국(*****)	
54	하동읍	목도리	395	유지	1,342	하동읍	목도리	395	유지	1,197.9	0.0	144.1	국(*****)	
55	하동읍	목도리	317-4	답	508	하동읍	목도리	317-4	답	454.5	0.0	53.5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56	하동읍	목도리	342	대	276	하동읍	목도리	342	대	320.8	44.8	0.0	김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57	하동읍	목도리	314-9	전	801	하동읍	목도리	314-9	전	801.0	0.0	0.0	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환로**번길**,***동****호(좌동,경남아너스빌)
58	하동읍	목도리	314-24	전	2,145	하동읍	목도리	314-24	전	2,197.4	52.4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
59	하동읍	목도리	314-33	전	694	하동읍	목도리	314-33	전	743.5	49.5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
60	하동읍	목도리	314-34	전	264	하동읍	목도리	314-34	전	264.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
61	하동읍	목도리	306-12	답	2,043	하동읍	목도리	306-12	답	2,032.8	0.0	10.2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62	하동읍	목도리	306-25	답	10	-	-	-	-	말소	0.0	10.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63	하동읍	목도리	388-1	전	152	하동읍	목도리	388-1	전	171.4	19.4	0.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64	하동읍	목도리	331	대	155	하동읍	목도리	331	대	155.0	0.0	0.0	김**	비파리 ****
65	하동읍	목도리	310-17	답	1,365	하동읍	목도리	310-17	답	1,365.0	0.0	0.0	김**	***
66	하동읍	목도리	310-23	참고 용지	529	하동읍	목도리	310-23	참고 용지	553.0	24.0	0.0	김**	***
67	하동읍	목도리	372	대	496	하동읍	목도리	372	대	496.0	0.0	0.0	김**	***
68	하동읍	목도리	373	대	265	하동읍	목도리	373	대	254.0	0.0	11.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69	하동읍	목도리	314-7	전	957	하동읍	목도리	314-7	전	957.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
70	하동읍	목도리	314-8	전	496	하동읍	목도리	314-8	전	496.0	0.0	0.0	김**	***
71	하동읍	목도리	310-12	답	539	하동읍	목도리	310-12	답	539.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72	하동읍	목도리	311-6	전	304	하동읍	목도리	311-6	전	319.4	15.4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73	하동읍	목도리	312-26	전	681	하동읍	목도리	312-26	전	561.4	0.0	119.6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74	하동읍	목도리	376	대	60	하동읍	목도리	376	대	70.6	10.6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75	하동읍	목도리	430-2	대	248	하동읍	목도리	430-2	대	248.0	0.0	0.0	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번길 **, *층 (신평동)
76	하동읍	목도리	239-1	답	231	하동읍	목도리	239-1	답	145.7	0.0	85.3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77	하동읍	목도리	310-15	답	2,163	하동읍	목도리	310-15	답	2,270.3	107.3	0.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78	하동읍	목도리	310-33	구거	32	-	-	-	-	말소	0.0	32.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79	하동읍	목도리	365-1	대	370	하동읍	목도리	365-1	대	377.2	7.2	0.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80	하동읍	목도리	365-3	대	216	하동읍	목도리	365-3	대	216.0	0.0	0.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81	하동읍	목도리	365-5	대	618	하동읍	목도리	365-5	대	526.0	0.0	92.0	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반송로***,***동***호(반림동,현대아파트)
82	하동읍	목도리	393-6	대	606	하동읍	목도리	393-6	대	606.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83	하동읍	목도리	306-17	답	1,570	하동읍	목도리	306-17	답	1,570.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84	하동읍	목도리	317-5	답	188	하동읍	목도리	317-5	답	139.9	0.0	48.1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85	하동읍	목도리	317-7	답	39	하동읍	목도리	317-7	답	22.1	0.0	16.9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86	하동읍	목도리	342-1	대	150	하동읍	목도리	342-1	대	166.6	16.6	0.0	김**	*****
87	하동읍	목도리	239-2	답	86	하동읍	목도리	239-2	답	86.0	0.0	0.0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번길 ****(의정부동)
88	하동읍	목도리	318	대	157	하동읍	목도리	318	대	182.7	25.7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89	하동읍	목도리	307-4	답	3,641	하동읍	목도리	307-4	답	3,641.0	0.0	0.0	김**	부산 사하구 괴정동 *****
90	하동읍	목도리	312-8	전	819	하동읍	목도리	312-8	전	856.5	37.5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91	하동읍	목도리	312-9	전	501	하동읍	목도리	312-9	전	501.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92	하동읍	목도리	405-1	대	419	하동읍	목도리	405-1	대	292.1	0.0	126.9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93	하동읍	목도리	405-4	대	4	하동읍	목도리	405-4	대	4.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94	하동읍	목도리	312-10	전	953	하동읍	목도리	312-10	전	844.0	0.0	0.0	김** 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312-49								전	109.0	김** 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96	하동읍	목도리	314-25	대	220	하동읍	목도리	314-25	대	233.9	13.9	0.0	김**	***-
97	하동읍	목도리	236-1	답	112	하동읍	목도리	236-1	답	112.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98	하동읍	목도리	236-15	답	50	-	-	-	-	말소	0.0	5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99	하동읍	목도리	431-2	전	430	하동읍	목도리	431-2	전	430.0	0.0	0.0	김**	***
100	하동읍	목도리	311-20	공장 용지	516	하동읍	목도리	311-20	공장 용지	539.9	23.9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길 **
101	하동읍	목도리	409-3	대	243	하동읍	목도리	409-3	대	230.7	0.0	12.3	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
102	하동읍	목도리	404-3	대	312	하동읍	목도리	404-3	대	312.0	0.0	0.0	김**	*****
103	하동읍	목도리	401-3	유지	36	하동읍	목도리	401-3	유지	36.0	0.0	0.0	김** 박** 황**	하동읍 목도리 ***
104	하동읍	목도리	305-11	전	530	하동읍	목도리	305-11	전	532.9	2.9	0.0	김**	***
105	하동읍	목도리	312-3	답	2,505	하동읍	목도리	312-3	답	2,594.3	89.3	0.0	김**	***
106	하동읍	목도리	312-14	전	3,785	하동읍	목도리	312-14	전	3,785.0	0.0	0.0	김**	***
107	하동읍	목도리	421	대	245	하동읍	목도리	421	대	219.4	0.0	25.6	김**	***
108	하동읍	목도리	434	대	225	하동읍	목도리	434	대	237.7	12.7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09	하동읍	목도리	435	대	205	하동읍	목도리	435	대	205.0	0.0	0.0	김**	***
110	하동읍	목도리	306-19	답	1,980	하동읍	목도리	306-19	답	1,980.0	0.0	0.0	강**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소재*길*,가동***호(무지개맨션)
111	하동읍	목도리	306-20	답	1,967	하동읍	목도리	306-20	답	1,967.0	0.0	0.0	김**	***
112	하동읍	목도리	314-1	전	853	하동읍	목도리	314-1	전	853.0	0.0	0.0	김**	***
113	하동읍	목도리	422	대	295	하동읍	목도리	422	대	340.0	0.0	0.0	김**	***
114			422-1	대	45								김**	
115	하동읍	목도리	306-13	답	983	하동읍	목도리	306-13	답	1,035.8	30.8	0.0	김**	***
116			306-24	답	22								김**	
117	하동읍	목도리	310-27	답	1,993	하동읍	목도리	310-27	답	2,015.8	22.8	0.0	김**	***
118	하동읍	목도리	312-24	답	1,296	하동읍	목도리	312-24	답	1,343.6	47.6	0.0	김**	하동읍 목도리 ***
119	하동읍	목도리	335	대	393	하동읍	목도리	335	대	344.7	0.0	48.3	김**	하동읍 목도리 ***
120	하동읍	목도리	336	전	255	하동읍	목도리	336	전	219.9	0.0	35.1	김**	하동읍 목도리 ***
121	하동읍	목도리	387-3	창고 용지	172	하동읍	목도리	387-3	창고 용지	172.0	0.0	0.0	김**	***
122	하동읍	목도리	387-7	전	102	하동읍	목도리	387-7	전	133.8	31.8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23	하동읍	목도리	388-3	창고 용지	228	하동읍	목도리	388-3	창고 용지	228.0	0.0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24	하동읍	목도리	403	전	179	-	-	-	-	말소	0.0	179.0	김**	하동읍 목도리 ***
125	하동읍	목도리	404-1	대	174	하동읍	목도리	404-1	대	154.9	0.0	19.1	김**	***
126	하동읍	목도리	407-1	대	1,005	하동읍	목도리	407-1	대	1,365.9	148.9	0.0	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27			408-1	대	169								김**	
128			408-3	대	43								김**	
129			433	대	833								김**	
130	하동읍	목도리	438	대	274	하동읍	목도리	438	대	274.0	0.0	0.0	김**	하동읍 목도리 ***
131	하동읍	목도리	439	임야	1,230	하동읍	목도리	439	임야	1,165.3	0.0	64.7	김**	하동읍 목도리 ***
132	하동읍	목도리	393-1	유지	2,078	하동읍	목도리	393-1	유지	1,118.8	0.0	959.2	***마을회	***
133	하동읍	목도리	393-3	대	1,403	하동읍	목도리	393-3	대	1,447.2	44.2	0.0	***마을회	***
134	하동읍	목도리	396	유지	1,048	하동읍	목도리	396	유지	1,048.0	0.0	0.0	***마을회	***
135	하동읍	목도리	397	유지	542	하동읍	목도리	397	유지	542.0	0.0	0.0	***마을회	***
136	하동읍	목도리	398	유지	208	하동읍	목도리	398	유지	675.5	467.5		***마을회	***
137	하동읍	목도리	399-1	유지	324	하동읍	목도리	399-1	유지	188.3	0.0	135.7	***마을회	***
138	하동읍	목도리	400-1	유지	195	하동읍	목도리	400-1	유지	195.0	0.0	0.0	***마을회	***
139	하동읍	목도리	391	대	613	하동읍	목도리	391	대	555.0	0.0	58.0	**마을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40	하동읍	목도리	391-2	대	377	하동읍	목도리	391-2	대	435.0	58.0	0.0	**마을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41	하동읍	목도리	399-3	답	10	하동읍	목도리	399-3	답	10.0	0.0	0.0	***위	***
142	하동읍	목도리	309-11	구거	124	하동읍	목도리	309-11	구거	53.7	0.0	70.3	문**	**--
143	하동읍	목도리	330-1	대	294	하동읍	목도리	330-1	대	341.4	47.4	0.0	문**	하동읍 목도리 ***--
144	하동읍	목도리	389-4	답	69	하동읍	목도리	389-4	답	88.4	19.4	0.0	문**	***--*
145	하동읍	목도리	389-6	답	159	하동읍	목도리	389-6	답	77.2	0.0	81.8	문**	하동읍 목도리 ***--*
146	하동읍	목도리	310-21	답	212	하동읍	목도리	310-21	답	212.0	0.0	0.0	박**	***--*
147	하동읍	목도리	310-4	답	1,145	하동읍	목도리	310-4	답	1,145.0	0.0	0.0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48	하동읍	목도리	310-8	답	1,415	하동읍	목도리	310-8	답	1,415.0	0.0	0.0	박**	***
149	하동읍	목도리	310-9	답	593	하동읍	목도리	310-9	답	593.0	0.0	0.0	박**	***
150	하동읍	목도리	310-18	답	1,837	하동읍	목도리	310-18	답	1,837.0	0.0	0.0	박**	***
151	하동읍	목도리	311-12	전	1,269	하동읍	목도리	311-12	전	1,244.9	0.0	24.1	박**	***

152	하동읍	목도리	312-17	전	1,005	하동읍	목도리	312-17	전	1,005.0	0.0	0.0	박**	***
153	하동읍	목도리	312-19	전	704	하동읍	목도리	312-19	전	834.5	130.5	0.0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54	하동읍	목도리	312-20	전	1,306	하동읍	목도리	312-20	전	1,306.0	0.0	0.0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55	하동읍	목도리	412	대	389	하동읍	목도리	412	대	383.2	0.0	5.8	박**	***
156	하동읍	목도리	413	대	231	하동읍	목도리	413	대	264.8	33.8	0.0	박**	***
157	하동읍	목도리	419	대	155	하동읍	목도리	419	대	155.0	0.0	0.0	박**	***
158	하동읍	목도리	423	대	169	하동읍	목도리	423	대	239.7	0.0	8.3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59			424	대	79									
160	하동읍	목도리	312-1	답	2,171	하동읍	목도리	312-1	답	2,171.0	0.0	0.0	박**	***
161	하동읍	목도리	312-2	답	1,699	하동읍	목도리	312-2	답	1,699.0	0.0	0.0	박**	읍내동****
162	하동읍	목도리	312-30	전	1,339	하동읍	목도리	312-30	전	1,302.0	0.0	37.0	박**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옥산리***-*성우목화맨션 ****-***
163	하동읍	목도리	310-16	대	560	하동읍	목도리	310-16	대	550.2	0.0	9.8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
164	하동읍	목도리	310-38	대	235	하동읍	목도리	310-38	대	291.2	56.2	0.0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
165	하동읍	목도리	313-5	전	896	하동읍	목도리	313-5	전	903.0	7.0	0.0	박**	***-**
166	하동읍	목도리	313-7	전	628	하동읍	목도리	313-7	전	635.0	7.0	0.0	박**	***-**
167	하동읍	목도리	236-2	답	202	-	-	-	-	말소	0.0	202.0	백**	***
168	하동읍	목도리	409-2	구거	3	하동읍	목도리	409-2	구거	3.0	0.0	0.0	백**	***
169	하동읍	목도리	325	대	262	하동읍	목도리	325	대	385.6	123.6	0.0	백**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창보밀레시티**-*단지연립****-***
170	하동읍	목도리	326	전	1,183	하동읍	목도리	326	전	1,117.2	0.0	65.8	백**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창보밀레시티**-*단지연립****-***
171	하동읍	목도리	375	대	136	하동읍	목도리	375	대	136.0	0.0	0.0	백**	****-*
172	하동읍	목도리	306-16	대	660	하동읍	목도리	306-16	대	660.0	0.0	0.0	백**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73	하동읍	목도리	306-32	답	441	하동읍	목도리	306-32	답	441.0	0.0	0.0	백**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74	하동읍	목도리	409-1	대	531	하동읍	목도리	409-1	대	546.7	15.7	0.0	백**	***
175	하동읍	목도리	410-3	대	44	하동읍	목도리	410-3	대	44.0	0.0	0.0	백**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76	하동읍	목도리	406-1	대	192	하동읍	목도리	406-1	대	214.6	22.6	0.0	서**	광평리 ***-*
177	하동읍	목도리	314-2	전	945	하동읍	목도리	314-2	전	945.0	0.0	0.0	실**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178	하동읍	목도리	341	답	112	-	-	-	-	말소	0.0	112.0	성**	***
179	하동읍	목도리	386-1	대	475	하동읍	목도리	386-1	대	452.2	0.0	22.8	성**	***
180	하동읍	목도리	386-5	대	233	하동읍	목도리	386-5	대	202.6	0.0	30.4	성**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81	하동읍	목도리	404-2	대	79	하동읍	목도리	404-2	대	172.0	93.0	0.0	성**	하동읍 목도리 ***
182	하동읍	목도리	314-10	전	699	하동읍	목도리	314-10	전	699.0	0.0	0.0	소**	광평리 ***-*
183	하동읍	목도리	306-11	답	660	하동읍	목도리	306-11	답	660.0	0.0	0.0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84	하동읍	목도리	306-33	답	3,368	하동읍	목도리	306-33	답	3,368.0	0.0	0.0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85	하동읍	목도리	306-1	답	988	하동읍	목도리	306-1	답	908.4	0.0	79.6	소**	하동읍 목도리 ***
186	하동읍	목도리	306-4	답	423	하동읍	목도리	306-4	답	441.6	18.6	0.0	소**	하동읍 목도리 ***
187	하동읍	목도리	306-15	답	664	하동읍	목도리	306-15	답	664.0	0.0	0.0	소**	하동읍 목도리 ***
188	하동읍	목도리	311-3	전	3,066	하동읍	목도리	311-3	전	3,124.2	58.2	0.0	소**	하동읍 목도리 ***
189	하동읍	목도리	311-13	답	3,246	하동읍	목도리	311-13	답	3,246.0	0.0	0.0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190	하동읍	목도리	365-8	대	402	하동읍	목도리	365-8	대	525.5	123.5	0.0	소**	***
191	하동읍	목도리	387-1	대	102	하동읍	목도리	387-1	대	82.6	0.0	19.4	소**	***
192	하동읍	목도리	387-9	답	13	-	-	-	-	말소	0.0	13.0	소**	***
193	하동읍	목도리	387-11	전	26	-	-	-	-	말소	0.0	26.0	소**	***
194	하동읍	목도리	429	참고 용지	294	하동읍	목도리	429	참고 용지	294.0	0.0	0.0	소**	***

195	하동읍	목도리	430	대	191	하동읍	목도리	430	대	191.0	0.0	0.0	소**	하동읍 목도리 ***
196	하동읍	목도리	430-3	대	79	하동읍	목도리	430-3	대	79.0	0.0	0.0	소**	하동읍 목도리 ***
197	하동읍	목도리	310-2	답	3,817	하동읍	목도리	310-2	답	3,817.0	0.0	0.0	손**	***
198	하동읍	목도리	383	대	780	하동읍	목도리	383	대	1,038.0	20.0	0.0	손**	***
199			384	대	175								손**	
200			385	대	63								손**	
201	하동읍	목도리	312-34	대	418	하동읍	목도리	312-34	대	438.0	20.0	0.0	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202	하동읍	목도리	324	임야	1,372	하동읍	목도리	324	임야	1,189.2	0.0	182.8	손** 공** 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층
203	하동읍	목도리	314-17	전	641	하동읍	목도리	314-17	전	641.0	0.0	0.0	손총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
204	하동읍	목도리	310-1	답	1,974	하동읍	목도리	310-1	답	1,974.0	0.0	0.0	손**	***
205	하동읍	목도리	312-27	전	1,365	하동읍	목도리	312-27	전	1,365.0	0.0	0.0	손**	목도리 ***
206	하동읍	목도리	312-28	전	1,018	하동읍	목도리	312-28	전	1,018.0	0.0	0.0	손**	***
207	하동읍	목도리	312-29	전	916	하동읍	목도리	312-29	전	906.6	0.0	9.4	손**	***
208	하동읍	목도리	378	대	553	하동읍	목도리	378	대	553.0	0.0	0.0	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09	하동읍	목도리	387-4	창고 용지	383	하동읍	목도리	387-4	창고 용지	423.7	40.7	0.0	손**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10	하동읍	목도리	387-5	전	179	하동읍	목도리	387-5	전	42.3	0.0	136.7	손**	***
211	하동읍	목도리	314-3	전	1,048	하동읍	목도리	314-3	전	1,048.0	0.0	0.0	손**	경기도의왕시모란길**,***동***호 (오전동,삼호백조아파트)
212	하동읍	목도리	329	묘지	357	하동읍	목도리	329	묘지	357.0	0.0	0.0	신**	적량면 관리 ***
213	하동읍	목도리	332	전	1,421	하동읍	목도리	332	전	1,421.0	0.0	0.0	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번길***,***호 (재송동,안성타워)
214	하동읍	목도리	319	전	56	하동읍	목도리	319	전	56.0	0.0	0.0	신**	악양면 중대리
215	하동읍	목도리	321	전	83	하동읍	목도리	321	전	83.0	0.0	0.0	신**	악양면 중대리
216	하동읍	목도리	320	임야	1,236	하동읍	목도리	320	임야	984.5	0.0	251.5	신**	서울 관악구 사당동 ***-**
217	하동읍	목도리	327	전	1,554	하동읍	목도리	327	전	1,554.0	0.0	0.0	신**	서울 관악구 사당동 ***-**
218	하동읍	목도리	314-12	전	533	하동읍	목도리	314-12	전	542.6	9.6	0.0	양**	***
219	하동읍	목도리	312-21	전	1,560	하동읍	목도리	312-21	전	1,560.0	0.0	0.0	양**	***
220	하동읍	목도리	310-34	구거	61	-	-	-	-	말소	0.0	61.0	왕** 조** 조**	부산(남구)영도구 남향동*가 ***
221	하동읍	목도리	393-2	답	325	하동읍	목도리	393-2	답	329.6	4.6	0.0	유**	목도리 ***
222	하동읍	목도리	393-4	도로	71	-	-	-	-	말소	0.0	71.0	유**	목도리 ***
223	하동읍	목도리	314-14	전	942	하동읍	목도리	314-14	전	942.0	0.0	0.0	윤**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24	하동읍	목도리	314-15	전	393	하동읍	목도리	314-15	전	393.0	0.0	0.0	윤**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25	하동읍	목도리	333	전	165	하동읍	목도리	333	전	165.0	0.0	0.0	이**	하동읍 목도리 ***
226	하동읍	목도리	416	잡종지	129	하동읍	목도리	416	잡종지	112.1	0.0	16.9	이**	***
227	하동읍	목도리	436	대	195	하동읍	목도리	436	대	195.0	0.0	0.0	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28	하동읍	목도리	313-1	전	351	하동읍	목도리	313-1	전	373.6	22.6	0.0	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29	하동읍	목도리	328	임야	2,658	하동읍	목도리	328	임야	2,658.0	0.0	0.0	이** 진**	경기도안양시만안구병목안로***번길***-**,에이동***호(안양 동,벨엘하이츠빌라)
230	하동읍	목도리	313-4	전	1,684	하동읍	목도리	313-4	전	1,692.0	8.0	0.0	이**	***
231	하동읍	목도리	405-2	대	552	하동읍	목도리	405-2	대	536.1	0.0	15.9	이**	하동읍 목도리 ***
232	하동읍	목도리	산8-3	임야	364	하동읍	목도리	산8-3	임야	381.8	17.8	0.0	이**	하동읍 목도리 ***

							(405-5)							
233	하동읍	목도리	310-13	답	674	하동읍	목도리	310-13	답	674.0	0.0	0.0	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
234	하동읍	목도리	437	대	126	하동읍	목도리	437	대	171.0	45.0	0.0	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길 **
235	하동읍	목도리	365-7	대	466	하동읍	목도리	365-7	대	448.9	0.0	17.1	***** ***** ****재단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236	하동읍	목도리	425	대	205	하동읍	목도리	425	대	248.4	0.0	39.6	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37			425-1	대	27								정**	
238			425-2	대	56								정**	
239	하동읍	목도리	309-1	답	601	하동읍	목도리	309-1	답	628.7	27.7	0.0	조**	***-*
240	하동읍	목도리	309-4	답	284	하동읍	목도리	309-4	답	284.0	0.0	0.0	조**	***-*
241	하동읍	목도리	309-10	구거	87	하동읍	목도리	309-10	구거	87.0	0.0	0.0	조**	***-*
242	하동읍	목도리	314-5	전	1,954	하동읍	목도리	314-5	전	1,974.2	20.2	0.0	조**	***-*
243	하동읍	목도리	405-3	대	255	하동읍	목도리	405-3	대	321.3	66.3	0.0	조**	***
244	하동읍	목도리	330-4	대	121	하동읍	목도리	330-4	대	264.8	143.8	0.0	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45	하동읍	목도리	330-6	임야	46	-	-	-	-	말소	0.0	46.0	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46	하동읍	목도리	367	대	149	하동읍	목도리	367	대	124.6	0.0	24.4	조**	부산 영도구 신선동*가 ***-**
247	하동읍	목도리	368	대	76	하동읍	목도리	368	대	76.0	0.0	0.0	조**	하동읍 목도리 ***
248	하동읍	목도리	389-1	답	460	하동읍	목도리	389-1	답	541.6	81.6	0.0	조**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 해인그린아파트빌 ****-****
249	하동읍	목도리	310-20	답	609	하동읍	목도리	310-20	답	609.0	0.0	0.0	조**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섬진강대로****,나동***호(미도빌라)
250	하동읍	목도리	310-22	답	671	하동읍	목도리	310-22	답	671.0	0.0	0.0	조**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섬진강대로****,나동***호(미도빌라)
251	하동읍	목도리	314-35	대	331	하동읍	목도리	314-35	대	380.0	49.0	0.0	조**	***-*
252	하동읍	목도리	314-36	전	60	-	-	-	-	말소	0.0	60.0	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253	하동읍	목도리	312-16	전	2,026	하동읍	목도리	312-16	전	2,026.0	0.0	0.0	조**	하동읍 목도리 ***
254	하동읍	목도리	312-48	전	221	하동읍	목도리	312-48	전	186.5	0.0	34.5	조**	***-*
255	하동읍	목도리	426	대	162	하동읍	목도리	426	대	189.3	27.3	0.0	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
256	하동읍	목도리	417	대	208	하동읍	목도리	417	대	231.8	23.8	0.0	조**	경상남도거제시제산로***,**동***호(양정동,삼성쉐르빌아파트)
257	하동읍	목도리	420	대	195	하동읍	목도리	420	대	171.2	0.0	23.8	조**	경상남도거제시제산로***,**동***호(양정동,삼성쉐르빌아파트)
258	하동읍	목도리	389-2	전	383	하동읍	목도리	389-2	전	383.0	0.0	0.0	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259	하동읍	목도리	373-1	대	142	하동읍	목도리	373-1	대	142.0	0.0	0.0	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60	하동읍	목도리	374	대	251	하동읍	목도리	374	대	251.0	0.0	0.0	진**	***
261	하동읍	목도리	377	대	278	하동읍	목도리	377	대	278.0	0.0	0.0	진**	***
262	하동읍	목도리	381	대	152	하동읍	목도리	381	대	86.0	0.0	66.0	진**	***
263	하동읍	목도리	390-1	답	450	하동읍	목도리	390-1	답	530.6	80.6	0.0	진**	***
264	하동읍	목도리	390-4	답	23	하동읍	목도리	390-4	답	23.0	0.0	0.0	진**	***
265	하동읍	목도리	311-14	답	979	하동읍	목도리	311-14	답	979.0	0.0	0.0	차**	하동읍 목도리 ***
266	하동읍	목도리	330-3	대	86	하동읍	목도리	330-3	대	86.0	0.0	0.0	차**	***
267	하동읍	목도리	306-2	답	1,732	하동읍	목도리	306-2	답	1,649.2	0.0	82.8	최**	***-****
268	하동읍	목도리	311-1	대	659	하동읍	목도리	311-1	대	659.0	0.0	0.0	최**	***-****
269	하동읍	목도리	311-8	전	1,402	하동읍	목도리	311-8	전	1,433.8	31.8	0.0	최**	하동읍 목도리 ***
270	하동읍	목도리	311-29	답	1,751	하동읍	목도리	311-29	답	1,751.0	0.0	0.0	최**	***-****
271	하동읍	목도리	312-7	전	2,192	하동읍	목도리	312-7	전	2,192.0	0.0	0.0	최**	***-****
272	하동읍	목도리	306-14	답	1,012	하동읍	목도리	306-14	답	1,059.4	47.4	0.0	최**	***
273	하동읍	목도리	317-1	답	763	하동읍	목도리	317-1	답	564.9	0.0	198.1	최**	***
274	하동읍	목도리	340	대	574	하동읍	목도리	340	대	628.8	54.8	0.0	최**	하동읍 목도리 ***

275	하동읍	목도리	310-24	답	2,006	하동읍	목도리	310-24	답	2,006.0	0.0	0.0	최**	***
276	하동읍	목도리	310-26	답	2,022	하동읍	목도리	310-26	답	2,022.0	0.0	0.0	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277	하동읍	목도리	313-2	전	2,309	하동읍	목도리	313-2	전	2,309.0	0.0	0.0	최**	***
278	하동읍	목도리	322	전	420	하동읍	목도리	322	전	290.7	0.0	129.3	최**	***
279	하동읍	목도리	410-1	대	76	하동읍	목도리	411	대	552.0	0.0	0.0	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길 ***
410-2			대	187	최**									
411			대	289	최**									
282	하동읍	목도리	309-5	답	1,149	하동읍	목도리	309-5	답	1,149.0	0.0	0.0	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동산로***,***동***호(상남동,대동아파트)
283	하동읍	목도리	310-3	답	2,200	하동읍	목도리	310-3	답	2,200.0	0.0	0.0	문**	경상남도김해시삼문로**,***동***호(삼문동,갑오마을부영그린타운*차)
284	하동읍	목도리	312-25	전	1,101	하동읍	목도리	312-25	전	1,160.8	59.8	0.0	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원이대로***,***동***호(상남동,성원아파트)
285	하동읍	목도리	236-13	도로	444	하동읍	목도리	236-13	도로	790.3	1,385.2	0.0	하**	
286								236-17	도로	1,038.9			하**	
287	하동읍	목도리	311-23	전	85	하동읍	목도리	311-23	전	59.5	0.0	25.5	하**	
288	하동읍	목도리	311-24	대	63	하동읍	목도리	311-24	대	27.0	0.0	36.0	하**	
289	하동읍	목도리	311-25	공장 용지	102	하동읍	목도리	311-25	공장 용지	71.0	0.0	31.0	하**	
290	하동읍	목도리	311-26	전	60	하동읍	목도리	311-26	전	43.8	0.0	16.2	하**	
291	하동읍	목도리	311-27	대	6	하동읍	목도리	311-27	대	2.4	0.0	3.6	하**	
292	하동읍	목도리	311-28	전	210	하동읍	목도리	311-28	전	186.5	0.0	23.5	하**	
293	하동읍	목도리	313-12	전	46	하동읍	목도리	313-12	전	34.5	0.0	11.5	하**	
294	하동읍	목도리	313-13	전	260	하동읍	목도리	313-13	전	249.7	0.0	10.3	하**	
295	하동읍	목도리	391-1	대	184	하동읍	목도리	391-1	대	134.3	0.0	49.7	하**	
296	하동읍	목도리	414	전	251	하동읍	목도리	414	전	128.1	0.0	122.9	하**	
297	하동읍	목도리	415	대	69	하동읍	목도리	415	대	55.2	0.0	13.8	하**	
298	하동읍	목도리	427	대	261	하동읍	목도리	427	대	248.6	0.0	12.4	하**	
299	하동읍	목도리	236-11	구거	41	-	-	-	-	말소	0.0	41.0	****조합	읍내동 ****-**
300	하동읍	목도리	306-21	답	38	하동읍	목도리	306-21	답	34.0	0.0	66.0	****조합	읍내동 ***-**
301			306-22	답	36								****조합	
302			306-23	답	26								****조합	
303	하동읍	목도리	309-3	답	175	하동읍	목도리	309-3	답	115.0	0.0	60.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04	하동읍	목도리	309-8	구거	122	하동읍	목도리	309-8	구거	61.0	0.0	61.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05	하동읍	목도리	309-9	구거	483	하동읍	목도리	309-9	구거	264.0	0.0	219.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06	하동읍	목도리	309-12	구거	125	하동읍	목도리	309-12	구거	75.2	0.0	49.8	****조합	읍내동 ****-**
307	하동읍	목도리	309-13	구거	62	-	-	-	-	말소	0.0	62.0	****조합	읍내동 ****-**
308	하동읍	목도리	310-29	구거	220	하동읍	목도리	310-29	구거	159.7	0.0	60.3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09	하동읍	목도리	310-30	구거	441	하동읍	목도리	310-30	구거	254.2	0.0	186.8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10	하동읍	목도리	310-31	구거	161	하동읍	목도리	310-31	구거	114.0	0.0	47.0	****조합	읍내동 ****-**
311	하동읍	목도리	310-35	구거	110	하동읍	목도리	310-35	구거	73.9	0.0	36.1	****조합	읍내동 ****-**
312	하동읍	목도리	310-36	구거	84	하동읍	목도리	310-36	구거	73.7	0.0	10.3	****조합	읍내동 ****-**
313	하동읍	목도리	310-37	구거	138	하동읍	목도리	310-37	구거	87.8	0.0	50.2	****조합	읍내동 ****-**
314	하동읍	목도리	312-35	전	117	하동읍	목도리	312-35	전	59.8	0.0	57.2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15	하동읍	목도리	312-36	전	280	하동읍	목도리	312-36	전	125.1	0.0	154.9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16	하동읍	목도리	312-37	전	244	하동읍	목도리	312-37	전	130.8	0.0	113.2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17	하동읍	목도리	312-38	전	195	하동읍	목도리	312-38	전	92.8	0.0	102.2	****조합	읍내동 ****-**
318	하동읍	목도리	312-39	전	215	하동읍	목도리	312-39	전	97.3	0.0	117.7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19	하동읍	목도리	312-40	전	146	하동읍	목도리	312-40	전	60.5	0.0	85.5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0	하동읍	목도리	312-41	전	183	하동읍	목도리	312-41	전	72.6	0.0	110.4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1	하동읍	목도리	312-42	전	71	하동읍	목도리	312-42	전	29.4	0.0	41.6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2	하동읍	목도리	312-43	구거	305	하동읍	목도리	312-43	구거	183.7	0.0	121.3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3	하동읍	목도리	312-44	구거	199	하동읍	목도리	312-44	구거	119.8	0.0	79.2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4	하동읍	목도리	312-45	구거	280	하동읍	목도리	312-45	구거	156.9	0.0	123.1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5	하동읍	목도리	312-46	구거	52	하동읍	목도리	312-46	구거	41.5	0.0	10.5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6	하동읍	목도리	312-47	구거	98	하동읍	목도리	312-47	구거	89.7	0.0	8.3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27	하동읍	목도리	314-28	구거	25	하동읍	목도리	314-28	구거	19.3	0.0	5.7	*****조합	읍내동 ***-**-**
328	하동읍	목도리	314-29	구거	73	-	-	-	-	말소	0.0	73.0	*****조합	읍내동 ***-**-**
329	하동읍	목도리	314-30	구거	13	-	-	-	-	말소	0.0	13.0	*****조합	읍내동 ***-**-**
330	하동읍	목도리	386-2	구거	40	-	-	-	-	말소	0.0	40.0	*****조합	읍내동 ***-**-**
331	하동읍	목도리	386-3	대	83	-	-	-	-	말소	0.0	83.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32	하동읍	목도리	387-2	전	43	-	-	-	-	말소	0.0	43.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33	하동읍	목도리	387-8	구거	126	하동읍	목도리	387-8	구거	123.7	0.0	2.3	*****조합	읍내동 ***-**-**
334	하동읍	목도리	387-10	구거	7	-	-	-	-	말소	0.0	7.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35	하동읍	목도리	388-2	구거	112	하동읍	목도리	388-2	구거	73.2	0.0	38.8	*****조합	읍내동 ***-**-**
336	하동읍	목도리	388-4	답	7	-	-	-	-	말소	0.0	7.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37	하동읍	목도리	389-7	답	33	하동읍	목도리	389-7	답	132.2	92.2	0.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38	하동읍	목도리	390-3	답	7								*****조합	
339	하동읍	목도리	390-2	구거	109	하동읍	목도리	390-2	구거	38.8	0.0	70.2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40	하동읍	목도리	407-2	구거	7	-	-	-	-	말소	0.0	7.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41	하동읍	목도리	408-2	구거	169	-	-	-	-	말소	0.0	169.0	*****조합	하동읍 읍내동 ***-**-**
342	하동읍	목도리	314-4	전	1,193	하동읍	목도리	314-4	전	1,193.0	0.0	0.0	하**	하동읍 목도리 ***
343	하동읍	목도리	314-21	전	107	하동읍	목도리	314-21	전	107.0	0.0	0.0	하**	하동읍 목도리 ***
344	하동읍	목도리	382	대	436	하동읍	목도리	382	대	436.0	0.0	0.0	하**	하동읍 목도리 ***
345	하동읍	목도리	310-10	답	2,050	하동읍	목도리	310-10	답	2,064.4	14.4	0.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346	하동읍	목도리	312-12	전	2,712	하동읍	목도리	312-12	전	2,735.0	23.0	0.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347	하동읍	목도리	314-16	전	3,531	하동읍	목도리	314-16	전	3,594.4	63.4	0.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348	하동읍	목도리	418	대	126	하동읍	목도리	418	대	110.9	0.0	15.1	허**	***
349	하동읍	목도리	330-2	임야	6,394	하동읍	목도리	330-2	임야	6,378.1	0.0	15.9	허**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1-1763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하 동 군 수 (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세일지오텍		
	대표자 (성 명)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311호(호계동, 신원비전타워)
소하천명		고포천		
공사 (점용·사용) 개 요	위치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29 (BH-1 : 34°58'16.91"/127°46'33.72")		
	면적	1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2. 13. ~ 2021. 12. 17. ※ 기타사항 점용허가조건 참조		
	목적 및 사유	두우레저단지 지반조사		

열람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하동군 공고 제2021 - 1777호

연막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연막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7.

하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30.(23일간)
2. 사 업 명 : 연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4. 사업위치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47-8번지 일원
5.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22필, 32,679.0m²
6. 지적조서 : **【붙임】**
7. 관계서류 공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나. 공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8. 문 의 처 :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부서(☎055-880-2084)

붙 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지적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산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	성명	주소	
1	금성면	갈사리	142-10	대	122	금성면	갈사리	142-10	대	156.0	34.0		강**	***-**	
2	금성면	갈사리	146-24	대	405	금성면	갈사리	146-24	대	398.9	5.5		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금성면	갈사리	146-46	대	11.8	0.2		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3	금성면	갈사리	147-1	대	193	금성면	갈사리	147-1	대	472.4	45.4		고**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성오로140번길*, *동 ***호 (원종동, 으뜸주택)	
4	금성면	갈사리	195-7	대	234	금성면	갈사리								
5	금성면	갈사리	142-6	대	174	금성면	갈사리	142-6	대	148.3		25.7	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6	금성면	갈사리	146-17	대	256	금성면	갈사리	146-17	대	238.4		17.6	구**	***-*	
7	금성면	갈사리	139-5	제방	73	금성면	갈사리	139-5	제방	73.0			국(****)		
8	금성면	갈사리	142-14	도로	144	금성면	갈사리	910-45	도로	2,464.6	510.6		국(****)		
9	금성면	갈사리	142-28	도로	180	금성면	갈사리								
10	금성면	갈사리	910-45	도로	1,630	금성면	갈사리								
11	금성면	갈사리	146-16	잡종지	223	금성면	갈사리	146-16	잡종지	180.2		42.8	국(****)		
12	금성면	갈사리	162-21	도로	13	금성면	갈사리	162-21	도로	12.0		1.0	국(****)		
13	금성면	갈사리	136-3	잡종지	345	금성면	갈사리	136-3	잡종지	339.9		5.1	국(****)		
14	금성면	갈사리	136-8	잡종지	8	금성면	갈사리	136-8	잡종지	말소		8.0	국(****)		
15	금성면	갈사리	142-27	제방	353	금성면	갈사리	142-27	제방	355.3	2.3		국(****)		
16	금성면	갈사리	142-29	제방	452	금성면	갈사리	142-29	제방	459.0	7.0		국(****)		
17	금성면	갈사리	142-42	대	30	금성면	갈사리	142-42	대	13.2		16.8	국(****)		
18	금성면	갈사리	146-19	잡종지	57	금성면	갈사리	146-19	잡종지	107.8	50.8		국(****)		
19	금성면	갈사리	146-20	잡종지	306	금성면	갈사리	146-20	잡종지	316.6	10.6		국(****)		
20	금성면	갈사리	146-21	대	89	금성면	갈사리	146-21	대	89.0			국(****)		
21	금성면	갈사리	146-30	잡종지	122	금성면	갈사리	146-30	잡종지	114.9		7.1	국(****)		
22	금성면	갈사리	146-34	잡종지	250	금성면	갈사리	146-34	잡종지	205.9		44.1	국(****)		
23	금성면	갈사리	146-39	잡종지	41	금성면	갈사리	146-39	잡종지	말소		41.0	국(****)		
24	금성면	갈사리	146-40	대	8	금성면	갈사리	146-40	대	말소		8.0	국(****)		
25	금성면	갈사리	146-41	잡종지	12	금성면	갈사리	146-41	잡종지	말소		12.0	국(****)		
26	금성면	갈사리	146-42	대	6	금성면	갈사리	146-42	대	말소		6.0	국(****)		
27	금성면	갈사리	158-9	대	6	금성면	갈사리	158-9	대	7.4	1.4		국(****)		
28	금성면	갈사리	910-38	대	6	금성면	갈사리	910-38	대	말소		6.0	국(****)		
29	금성면	갈사리	910-41	도로	30	금성면	갈사리	910-41	도로	말소		30.0	국(****)		
30	금성면	갈사리	910-43	도로	21	금성면	갈사리	910-43	도로	말소		21.0	국(****)		
31	금성면	갈사리	142-3	대	185	금성면	갈사리	142-3	대	179.1		5.9	김**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32	금성면	갈사리	142-44	대	45	금성면	갈사리	142-44	대	말소		45.0	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 ***동 ***호(운암동, 운암아파트)	
33	금성면	갈사리	142-2	대	21	금성면	갈사리	142-2	대	말소		21.0	김**	하동군 금남면 갈사리 ***	
34	금성면	갈사리	142-17	대	126	금성면	갈사리	142-17	대	159.6	33.6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35	금성면	갈사리	146-38	대	21	금성면	갈사리	146-38	대	24.2	3.2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36	금성면	갈사리	147-5	대	65	금성면	갈사리	147-5	대	79.6	14.6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37	금성면	갈사리	141-3	대	132	금성면	갈사리	141-3	대	176.3	44.3		김**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38	금성면	갈사리	910-35	대	28	금성면	갈사리	910-35	대	말소		28.0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39	금성면	갈사리	143-1	전	33	금성면	갈사리	143-1	전	62.1	29.1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40	금성면	갈사리	146-35	전	194	금성면	갈사리	146-35	전	150.1		43.9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
41	금성면	갈사리	149-1	대	211	금성면	갈사리	149-1	대	193.8		17.2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
42	금성면	갈사리	146-29	잡종지	118	금성면	갈사리	146-29	잡종지	112.2		5.8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43	금성면	갈사리	137-3	대	605	금성면	갈사리	137-3	대	605.0			김**	미국 캘리포니아 알케티아 **** 파나에브뉴
44	금성면	갈사리	142-23	대	134	금성면	갈사리	142-23	대	93.6		40.4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45	금성면	갈사리	142-33	대	252	금성면	갈사리	142-33	대	253.3	1.3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46	금성면	갈사리	142-24	대	25	금성면	갈사리	142-24	대	말소		25.0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47	금성면	갈사리	142-34	대	119	금성면	갈사리	142-34	대	128.3	9.3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48	금성면	갈사리	142-35	대	44	금성면	갈사리	142-35	대	39.9		4.1	김**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49	금성면	갈사리	142-38	대	4	금성면	갈사리	142-38	대	말소		4.0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50	금성면	갈사리	142	대	89	금성면	갈사리	142	대	189.8	100.8		김**	경상남도 진주시 의곡길30번길 *(봉래동)
51	금성면	갈사리	142-12	대	48	금성면	갈사리	142-12	대	34.5		13.5	김**	***
52	금성면	갈사리	142-25	대	26	금성면	갈사리	142-25	대	말소		26.0	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53	금성면	갈사리	142-37	대	56	금성면	갈사리	142-37	대	75.6	19.6		김**	***
54	금성면	갈사리	147-9	대	665	금성면	갈사리	147-9	대	562.8		102.2	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사천푸르지오)
55	금성면	갈사리	153-1	도로	6	금성면	갈사리	153-1	도로	6.0			김**	갈사리
56	금성면	갈사리	144	전	163	금성면	갈사리	144	전	241.1	78.1		박**	하동읍 읍내리 ***-*
57	금성면	갈사리	144-1	전	987	금성면	갈사리	144-1	전	988.5	1.5		박**	하동읍 읍내리 ***-*
58	금성면	갈사리	145	전	625	금성면	갈사리	145	전	651.8	26.8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
59	금성면	갈사리	146-3	전	112	금성면	갈사리	146-3	전	147.5	35.5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
60	금성면	갈사리	146-5	전	348	금성면	갈사리	146-5	전	380.7	32.7		박**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
61	금성면	갈사리	146-6	임야	905	금성면	갈사리	146-6	임야	860.4		44.6	박**	하동읍 읍내리 ***-*
62	금성면	갈사리	146-36	임야	198	금성면	갈사리	146-36	임야	235.4	37.4		박**	하동읍 읍내리 ***-*
63	금성면	갈사리	146-43	임야	74	금성면	갈사리	146-43	임야	76.0	2.0		박**	하동읍 읍내리 ***-*
64	금성면	갈사리	147-4	대	595	금성면	갈사리	147-4	대	629.2	34.2		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65	금성면	갈사리	910-42	대	45	금성면	갈사리	910-42	대	말소		45.0	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66	금성면	갈사리	140	전	440	금성면	갈사리	140	전	440.0			박**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 쌍용플래티넘시티 2단지 ***동 ***호
67	금성면	갈사리	147-7	대	162	금성면	갈사리	147-7	대	197.1	35.1		서**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
68	금성면	갈사리	146-23	대	203	금성면	갈사리	146-23	대	208.0	5.0		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
69	금성면	갈사리	146-7	대	96	금성면	갈사리	146-7	대					
70	금성면	갈사리	146-9	대	72	금성면	갈사리	146-9	대	194.6	26.6		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71	금성면	갈사리	146-25	잡종지	162	금성면	갈사리	146-25	잡종지	146.2		15.8	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72	금성면	갈사리	146-13	대	263	금성면	갈사리	146-13	대	231.0		32.0	엄**, 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8길 ***-*(중곡동)
73	금성면	갈사리	146-2	임야	1,349	금성면	갈사리	146-2	임야	1,165.8		183.2	엄**	***-*
74	금성면	갈사리	146-11	임야	56	금성면	갈사리	146-11	임야	47.9		8.1	엄**	***-*
75	금성면	갈사리	146-4	전	96	금성면	갈사리	146-4	전	96.0			엄**	***-*
76	금성면	갈사리	143	전	496	금성면	갈사리	143	전	411.4		84.6	엄**	***
77	금성면	갈사리	146-10	임야	69	금성면	갈사리	146-10	임야	84.1	15.1		엄**	***-*
78	금성면	갈사리	158-8	도로	13	금성면	갈사리	158-8	도로	13.0			엄**, 하**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79	금성면	갈사리	137-1	대	165	금성면	갈사리	137-1	대	130.5		34.5	엄**	***
80	금성면	갈사리	148	대	261	금성면	갈사리	148	대	291.8	30.8		엄**	***
81	금성면	갈사리	195-6	대	256	금성면	갈사리	195-6	대	232.6		23.4	엄**	***

82	금성면	갈사리	137-2	대	135	금성면	갈사리	137-2	대	128.7		6.3	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83	금성면	갈사리	137-4	임야	953	금성면	갈사리	137-4	임야	899.2		53.8	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84	금성면	갈사리	141	대	450	금성면	갈사리	141	대	514.6	64.6		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85	금성면	갈사리	141-4	대	118	금성면	갈사리	141-4	대	210.5	92.5		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86	금성면	갈사리	142-7	대	1,234	금성면	갈사리	142-7	대	1,183.8		50.2	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87	금성면	갈사리	910-36	전	31	금성면	갈사리	910-36	전	말소		31.0	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88	금성면	갈사리	147-8	대	283	금성면	갈사리	147-8	대	376.7		51.3	연막***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89	금성면	갈사리	149-3	대	145									
90	금성면	갈사리	139	임야	334	금성면	갈사리	139	임야	325.9		8.1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91	금성면	갈사리	142-15	대	256	금성면	갈사리	142-15	대	256.0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92	금성면	갈사리	141-1	대	194	금성면	갈사리	141-1	대	248.0	34.0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93	금성면	갈사리	142-8	대	20									
94	금성면	갈사리	136	전	1,364	금성면	갈사리	136	전	1,375.2	11.2		이**	경상남도 창원시 남양동 * 동성아파트 *-****
95	금성면	갈사리	146-28	대	108	금성면	갈사리	146-28	대	106.1		1.9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
96	금성면	갈사리	137-5	대	50	금성면	갈사리	137-5	대	말소		50.0	이**	금성면 갈사리 ***
97	금성면	갈사리	146-32	대	266	금성면	갈사리	146-32	대	244.1		21.9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98	금성면	갈사리	151	전	141	금성면	갈사리	151	전	208.5	67.5		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 **, ***동 ***호(거제동, 연제그린타워)
99	금성면	갈사리	142-22	대	210	금성면	갈사리	142-22	대	304.3	69.3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00	금성면	갈사리	142-31	대	25									
101	금성면	갈사리	146-33	창고용지	135	금성면	갈사리	146-33	창고용지	120.4		14.6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02	금성면	갈사리	146-18	잡종지	64	금성면	갈사리	146-18	잡종지	64.0	0.0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03	금성면	갈사리	149-4	대	122	금성면	갈사리	149-4	대	190.8	68.8		이**	***-*
104	금성면	갈사리	147-13	대	361	금성면	갈사리	147-13	대	말소		361.0	이**, 하동 *****	***-*
105	금성면	갈사리	142-26	대	145	금성면	갈사리	142-26	대	184.2	39.2		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06	금성면	갈사리	147-6	대	51	금성면	갈사리	147-6	대	51.0			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 ***동 ****호(거제동, 온천천2차 동원로알듀크)
107	금성면	갈사리	149-6	대	94	금성면	갈사리	149-6	대	94.0			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 ***동 ****호(거제동, 온천천2차 동원로알듀크)
108	금성면	갈사리	146-22	잡종지	178	금성면	갈사리	146-22	잡종지	181.2	3.2		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09	금성면	갈사리	147-2	대	210	금성면	갈사리	147-2	대	458.3		9.7	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10	금성면	갈사리	147-10	대	142									
111	금성면	갈사리	195-8	대	116									
112	금성면	갈사리	146-31	잡종지	114	금성면	갈사리	146-31	잡종지	99.4	14.6		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
113	금성면	갈사리	153-2	도로	18	금성면	갈사리	153-2	도로	18.0			정**	하동읍 읍내리 ***-*
114	금성면	갈사리	146-8	대	123	금성면	갈사리	146-8	대	108.8		14.2	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115	금성면	갈사리	146-15	대	290	금성면	갈사리	146-15	대	239.7		50.3	정**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116	금성면	갈사리	146-1	대	410	금성면	갈사리	146-1	대	377.2	72.8		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동촌길 **, *동 ***호(성원이화맨션)
						금성면	갈사리	146-45	대	130.9	25.3		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동촌길 **, *동 ***호(성원이화맨션)
117	금성면	갈사리	195-2	대	591	금성면	갈사리	195-2	대	575.2		15.8	최**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118	금성면	갈사리	142-21	대	200	금성면	갈사리	142-21	대	193.4		6.6	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633번길 *(본성동)
119	금성면	갈사리	136-1	전	11	금성면	갈사리	136-1	전	43.0	32.0		하**	

120	금성면	갈사리	136-2	도로	1,815	금성면	갈사리	136-2	도로	1,834.3	19.3		하**	
121	금성면	갈사리	136-4	도로	71	금성면	갈사리	136-4	도로	71.0			하**	
122	금성면	갈사리	136-5	도로	29	금성면	갈사리	136-5	도로	29.0			하**	
123	금성면	갈사리	136-6	도로	38	금성면	갈사리	136-6	도로	38.0			하**	
124	금성면	갈사리	136-7	도로	9	금성면	갈사리	136-7	도로	9.0			하**	
125	금성면	갈사리	136-9	잡종지	94	금성면	갈사리	136-9	잡종지	94.0			하**	
126	금성면	갈사리	136-10	잡종지	72	금성면	갈사리	136-10	잡종지	72.0			하**	
127	금성면	갈사리	137-6	임야	95	금성면	갈사리	137-6	임야	95.0			하**	
128	금성면	갈사리	138	전	89	금성면	갈사리	138	전	47.1		41.9	하**	
129	금성면	갈사리	139-3	임야	23	금성면	갈사리	139-3	임야	20.7		2.3	하**	
130	금성면	갈사리	142-13	대	20	금성면	갈사리	142-13	대	16.2		3.8	하**	
131	금성면	갈사리	142-16	잡종지	213	금성면	갈사리	142-16	잡종지	233.0	20.0		하**	
132	금성면	갈사리	142-30	잡종지	90	금성면	갈사리	142-30	잡종지	70.2		19.8	하**	
133	금성면	갈사리	142-32	잡종지	299	금성면	갈사리	142-32	잡종지	297.3		1.7	하**	
134	금성면	갈사리	142-39	잡종지	31	금성면	갈사리	142-39	잡종지	31.0			하**	
135	금성면	갈사리	142-43	도로	156	금성면	갈사리	142-43	도로	156.0			하**	
136	금성면	갈사리	142-45	잡종지	6	금성면	갈사리	142-45	잡종지	말소		6.0	하**	
137	금성면	갈사리	146-44	잡종지	5	금성면	갈사리	146-44	잡종지	6.8	1.8		하**	
						금성면	갈사리	146-47	잡종지	302.5	302.5		하**	
138	금성면	갈사리	149-5	도로	3	금성면	갈사리	149-5	도로	말소		3.0	하**	
139	금성면	갈사리	152	도로	360	금성면	갈사리	152	도로	530.1		5.9	하**	
140	금성면	갈사리	157-4	도로	176									
141	금성면	갈사리	158-7	대	49	금성면	갈사리	158-7	대	49.0			하**, 하**	
142	금성면	갈사리	162-6	도로	333	금성면	갈사리	162-6	도로	271.3		61.7	하**	
143	금성면	갈사리	162-20	잡종지	125	금성면	갈사리	162-20	잡종지	121.9		3.1	하**	
144	금성면	갈사리	147-3	대	134	금성면	갈사리	147-3	대	말소		134.0	하동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
145	금성면	갈사리	147-12	대	596	금성면	갈사리	147-12	대	540.6		55.4	하동 *****	노량리 ***-*
146	금성면	갈사리	142-11	대	45	금성면	갈사리	142-11	대	27.6		17.4	하동 *****	노량리 ***-*
147	금성면	갈사리	142-5	대	126	금성면	갈사리	142-5	대	124.5		1.5	하**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남포동*가)
148	금성면	갈사리	146-14	잡종지	180	금성면	갈사리	146-14	잡종지	144.4		35.6	하**, 김**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남포동*가)
149	금성면	갈사리	149-2	대	228	금성면	갈사리	149-2	대	245.4	17.4		홍**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 ***동 ****호(남강휴먼빌아파트)
150	금성면	갈사리	150	대	248	금성면	갈사리	150	대	299.0	51.0		황**	***

하동군 공고 제2021-1801호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제안이유 :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조례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증대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 나.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 라.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5, 메일 im93614@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를 “중·고등학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제4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을 “별표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 30만원
2. 고등학생 : 50만원
3. 대학생 : 100만원

제7조제1항 본문 중 “학교장을 통하여”를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 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분야 (신청 직전학 기)	중·고등 학생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대학생	평균 학점(4.5만점 기준)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		30	25	20	15	10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
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
학중 학과 성적이 교과별 평정결
과 성적 순위가 상위 50퍼센트 이
상인 교과목이 전체과목의 1/2 이
상인 자

<신 설>

2. (생 략)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
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
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
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
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이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
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9조·제10조 (생 략)

제2조(장학생의 자격) -----

-----.

1. 중·고등학생 :

2. 대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
과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
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선발) ① -----

----- 별표 평
가기준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
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중학생 : 30만원
2. 고등학생 : 50만원
3. 대학생 :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
·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
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
한다.

제10조·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
조와 같음)